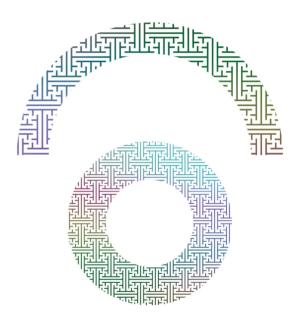
지방채무 총량관리방안





연 구 진

서정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기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국가 전체적으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채무총량 관리가 필요하며, 국가 의 경우 GDP 대비의 국가채무비율 지표를 사용하여 관리함. 정부는 당분간 국가채무비율을 45%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정부에서는 국가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건전화법(안)을 제정하여 현재 국회에 제출한 상태임. 이 재정건전화법(안)에서는 재정준칙으로 국 가채무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국가채무 총량을 GDP대 비 45%이하로 유지하게 다는 것임. 그리고 45%를 초과할 경우 국가채무 감축을 계획하고 있음
- 재정건전화법의 국가채무비율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 부문에서도 국가채무 관리 계획에 따른 지방채무 총량 관리 기준을 지방재정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지방채무 총량관리 기준을 재정건전화법의 규정과 연동할 것인지, 지 방채무 자체관리 기준으로 규정할 것인가를 지방재정 현실 및 지방채무 활용 등을 고려하여 규정해야 함
- 지방채무 관리는 지방 전체적으로의 총량도 중요하지만 지방차치단체별 총 량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함
 - 지방자치단체별 채무 총량, 즉 지방채무 총량 전체를 어떻게 안분할 것인
 지도 매우 중요함
- 본 연구에서는 지방채무 총량을 설정하는 방안과 지방차치단체별 총량 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지방채무 총량을 다양한 기준으로 설정해 보고, 그 총량을 기준으로 지방 자치단체별로 안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2. 정책건의

□ 채무총량 규모 설정(안)

- 지방총채무 기준, 관리채무 기준, 지방재정위기 기준으로 설정한 채무총량 을 지방채무 총량관리의 기준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지방총채무 기준은 지방채무를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는 기준으로, 관리채무기준은 지방재정운영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채무를 사용하는 기준, 재정위기 관리 기준은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지방채무 최대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20년 기준으로 지방채무총량을 설정하면,
 - 지방채무 최소기준(엄격관리 기준): 지방채무 45.5조원, GDP 대비 2.5%
 - 지방채무 자율기준(자율성 기준): 지방채무 54.3조원, GDP 대비 3.0%
 - 지방채무 최대기준(실질적 한도액): 지방채무 95.2조원, GDP 대비 5.2%
- 따라서 지방채무는 GDP 대비 2.5%에서 5% 사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 채무총량 안분(안)

- 지방채무 총량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하는 기준으로 지방채발행한도액 (기본한도액) 설정 기준, 지방채발행한도액(기본한도) 3년 평균 기준, 재정 규모(통합재정규모) 기준, 경상수익(통합회계) 기준, 일반재원(일반, 기타회 계) 기준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시뮬레이션 결과 이들 방법 보두 지방자치단체간 안분 비중에 큰 차이가 없 어, 지방채무와 관련이 있는 지방채발행한도액(3년 평균) 기준으로 안분하 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지방채무 총량규모 설정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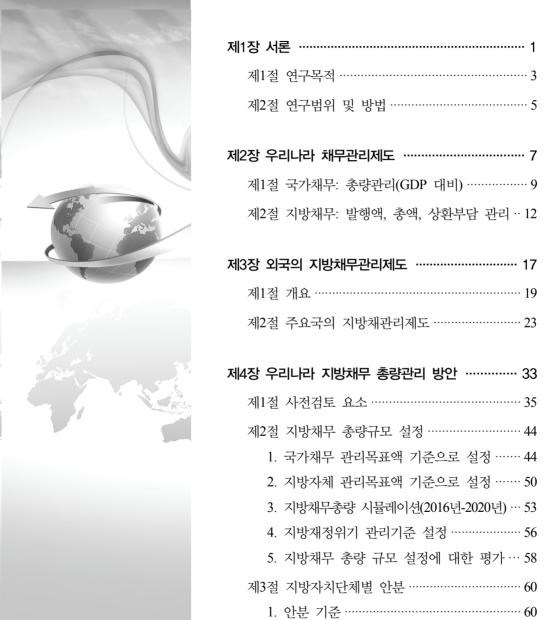
(단위: 조원, %)

구분	채무범위	2015	2020	비고
지방순채무 기준	지방채(차입금, 지방채증권) -정부차입금	30.5 (1.95)	40.8 (2.23)	- 현재 국가채무 산정시 범위 - 실질적 지방채무 범위로 보 기 곤란
지방총채무 기준 (순계)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	34.0 (2.18)	45.5 (2.49)	- 국가채무 산정시 지방순채 무보다는 총채무 사용이 바 람직함 - 재정건전화법의 지방채무 범 위임
관리채무 기준	지방총채무(순계) +중복분 포함 +BTL임차료 잔액	40.5 (2.60)	54.3 (2.97)	- 지방자치단체 채무관리 범 위로 적합
지방채발행 한도액 기준	관리채무 +우발채무 50%	57.6 (3.69)	77.1 (4.21)	- 지방채발행한도액 설정에는 필요 - 우발채무는 확정채무가 아 니므로 관리 부적합
재정위기 관리 기준	예산대비 25%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	71.2 (4.56)	95.2 (5.21)	- 지자체 채무관리 차원에서 재정위기 발생의 최저 수준 으로 적합

주: 2020년 채무총량 추정은 최종예산(2011-2015)의 평균 증기율을 적용함



차 례



2. 시뮬레이션 결과 ………6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79
제1절 요약	81
제2절 정책건의	83
[참고무허]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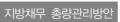


표 차 례



<표 2-1> 2017~2020 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 추정액 … 10
<표 2-2> 중기국가채무 전망1
<표 3-1> 주요 국가의 지방채 한도기준····································
<표 3-2> 주요국의 채무 및 GDP 대비 비율
(2012회계년도 기준) ····· 22
<표 4·1> 국가채무 추이 ···································
<표 4-2> 국가채무 내 지방채무(결산기준) ················ 3
<표 4-3> 국가예산 및 실사용액 현황 39
<표 4-4> 지방채무의 범위와 규모4
<표 4-5> 연도별 지방채발행 한도액4
<표 4-6> 지방재정 성장율 추이 4.
<표 4-7> 국가채무비율 45% 적용 지방재정채무와
지방교육재정채무 ····· 4
<표 4-8> 지방총채무(순계) 적용 지방채무와
지방교육채무 49
<표 4-9> 관리채무 총량 설정 ······ 50
<표 4-10> 지방채발행한도액, 상환액 기준의
지방채무 총량규모 52
<표 4-11> 예산대비채무비율 모니터링 기준으로
지방채무 총량규모 설정
< 4-12> 예산대비채무비율 25% 기준 채무총량 추정 ·· 5'
<표 4-13> 지방채무 총량규모 설정 대안의 비교 ····· 5
(표 4-14> 채무 총량의 지자체별 안분 비중 ·············· 6
<
지자체별 채무규모 ······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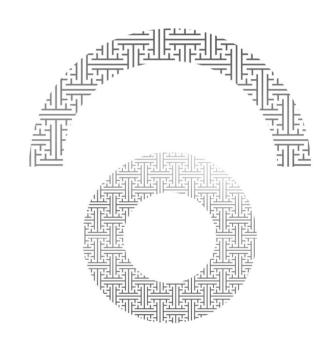
그 림 차 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림	3-1>	영국의	지방채발행한도제	26
<기리	3-2>	이보이	기바체 바해기즈 및 저치	29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 □ 지방채무 총량관리 필요
 - 정부에서는 국가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건전화법(안)을 제정하여 현재 국회에 제출한 상태임. 이 재정건전화법(안)에서는 재정준칙으로 국가 채무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국가채무 총량을 GDP대비 45%이하로 유지하게 다는 것임. 그리고 45%를 초과할 경우 국가채무 감축 을 계획하고 있음
 - 그리고 국가 중기재정계획(2016-2020)에서도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으로 유지를 계획하고 있음
 - 하지만 2015년 국가채무비율이 40%대에 근접하고 있으며, 경제성장 및 재정규모가 팽창함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45%를 초과할 수도 있어, 정부는 5년마다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45% 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재정건전화법의 국가채무비율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 부문에서도 국가채무 관리 계획에 따른 지방채무관리 기준을 지방재정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지방채무관리 기준을 재정건전화법의 규정과 연동할 것인지, 지방채무 자체적으로 총량관리 기준으로 규정할 것인가는 지방재정 현실 및 지방채무 활용 등을 고려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지방채무 총량관리 기준이 재정건전화법과 연계하여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지방채무 자체적인 총량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함이 필요함

- □ 지방채무 총량 관리 목표 설정 및 지자체별 한도액 산정 방법 모색
 - 지방채무 관리기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무 총량규모 설정이 중요함. 지방채무 총량을 재정건전화법의 국가채무 범위 내에서 정할 것인지, 지방 채무 자체 기준으로 할 것인지도 중요함
 - 본 연구에서는 국가채무비율 45% 범위 내에서 지방채무 총량을 설정하는 방안과 지방채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총량기준을 검토하고자 함
 - 지방재정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국가예산 중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사용하는 비중도 2016년 기준 44%(지방교육재정 14% 미포함)로 국가채무비율 45% 내에서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채무('15년 기준 28조원)를 GDP 대비 2% 미만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음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준으로 지방채무 총량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지방채무 관리는 지방 전체적으로의 총량도 중요하지만 지방차치단체별 총 량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함
 -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지방채무 총량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총량을 안 분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총량을 설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별 총량 결정 기준으로 다양한 기준을 검토하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적절한 안분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함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의 핵심 범위는 지방채무 총량 결정과 지방자치단체별 안분기준을 모색하는 것임
 - 지방채무 총량 설정 및 지방자치단체별 안분 기준은 다양한 기준으로 시 뮬레이션을 거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
- 지방채무 총량의 제시는 국가채무관리 기준에 따른 총량, 지방이 사용 가능한 총량의 범위, 지방재정위기 발생을 고려한 한도액 기준 등을 제시하고자 함
 - 지방채무 총량은 규모와 GDP 대비 비율을 제시함
 - 지방채무관리 기준으로 최소액 기준(국가채무 관리 기준 부합, 엄격한 관리 기준), 사용 가능 범위(자율적 지방채무 사용 가능 범위), 최고 한도액
 (재정위기 발생 기준) 기준 등을 제시함
-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무 총량의 안분은 세입 기준, 재정규모 기준, 지방채 발행한도액 기준 등으로 검토하고, 상호 비교하여 현실성 있고, 활용이 용 이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은 외국의 지방채무 관리 제도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중앙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채무관리 제도를 검토하여 지방채무 총량 결정, 지방자치단체 별 안분 기준에 활용함
- 주로 활용한 지방채무 통계자료는 연도별 지방채무잔액 통계, 지방채발 행한도액 설정 통계, 2015회계년도 지방재정분석 통계, 기획재정부의 '열린재정'통계,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365'의 통계를 활용함

제2장 우리나라 채무관리제도

제1절 국가채무: 총량관리(GDP 대비) 社

제2절 지방채무: 발행액, 총액, 상환부담 관리



제2장

우리나라 채무관리제도

제1절 T국가채무: 총량관리(GDP 대비)

□ 국가채무관리계획

- 정부는 국가재정법(제91조)에 따라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 국가채무관리계획은 '07년 최초로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 '07년도에는 중앙정부 채무에 한정, '08년부터 지방채무 포함
 - '08년부터 적자성 채무(상환재원 조세)와 금융성 채무(융자금, 외화자산 등 대응자산으로 상환)로 구분 관리
 - 채무의 범위는 국채(국고채, 국민주택채, 외평채¹⁾, 출자재정증권²⁾), 차입 금(국내, 해외),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방정부 순채무(지방자치단체와 교육 자치단체 포함)임
- 국가채무관리계획(2014-2018)에서는 국가채무 증가율을 안정화하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 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임

¹⁾ 원화표시 외평채는 '03년 11월부터 국고채로 통합 발행함에 따라 발행이 중단되었으며, '08년 도까지 전액 상화 완료

²⁾ IMF, 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을 하기 위한 '출자 재정증권'이 있으나, '86년 이후 발행실적이 없고 잔액 규모가 작음(113억원)

<표 2-1> 2017~2020 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 추정액

(단위: 조원)

714		'17년			'18년			'19년			'20년	
구분	차입	상환	잔액	차입	상환	잔액	차입	상환	잔액	차입	상환	잔액
□ 국가채무 총계 (GDP 대비, %)			682.7 (40.4)			722.5 (40.9)			756.8 (40.7)			793.5 (40.7)
○ 중앙정부채무	121.4		646.9		86.6			68 4	/			<u> </u>
■ 국채	120.1		643.0									
- 국고채	103.9	66.2	556.2	111.4	74.4	603.2	87.9	53.4	637.8	122.0	82.1	677.7
- 국민주택채	15.0	9.9	68.5	15.0	10.1	73.4	15.0	12.2	76.2	15.0	16.2	75.0
- 외평채	1.2	-	8.3	0.6	0.6	8.3	1.7	1.7	8.3	-	-	8.3
■차입금	1.3	1.5	3.7	1.5	2.1	3.1	1.3	2.7	1.7	1.3	1.6	1.4
- 국내차입금	1.3	1.5	3.7	1.5	2.1	3.1	1.3	2.7	1.7	1.3	1.6	1.4
- 해외차입금	-	-	-	-	-	-	-	-	-	-	-	-
■국고채무부담행위	-	0.3	0.2	-	0.05	0.15	-	0.06	0.09	-	0.04	0.05
○ 지방정부 순채무			35.7			34.3			32.8			31.0

자료: 기획재정부, 2016-2020년 국가채무관리계획

□ 중기재정운영계획

- 2016-2020년 중기재정운영계획 기간 중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수준에 서 관리 전망
 - 계획기간 중 국가채무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영 등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초반 수준으로 관리 전망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 대 수준은 다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양호한 수준임
 - 우리나라는 외부충격에 따른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급속한 저출 산·고령화, 통일 등 구조적 변화에 따른 중장기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
- 계획기간 동안의 중기 국가채무 전망은 다음과 같음

<표 2-2> 중기국가채무 전망

(단위: 조워)

구분	'16	'17	'18	'19	'20
국가채무	637.8	682.7	722.5	756.8	793.5
(GDP 대비, %)	(39.3)	(40.4)	(40.9)	(40.7)	(40.7)
- 적자성 채무	368.0	397.5	423.3	448.5	471.8
- 금융성 채무	269.8	285.2	299.2	308.4	321.7

주: '16년은 추경안 기준

□ 재정건전화법(안)

- 국가채무비율 45% 유지의 재정준칙 마련
 -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재정건전화법 제6조에 따르면 국가채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국가채무비율(국가채무총액을 국내총생산액으로 나눈 비율)을 100분의 45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3)
 - 재정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채무비율 45%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 5년마다 검토(기획재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및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

O 채무의 범위

- 국가채무: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가보증채무 중 정부의 대지 급(代支給) 이행이 확정된 채무(국가재정법 제91조 제2항에 따른 금전채무)
- 지방채무: 지방채(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보증채무부담행위 중 지방자 지단체의 이행책임이 확정된 금전 채무(동법 제13조 제1항), 채무부담행위 에 따른 채무(동법 제44조 제1항). 다만,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 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무 제외

³⁾ 참고로 의원입법(송영길 의원 대표 발의, 의원 39인 발의)으로 제출된 재정건전화법안의 제7조에서는 국가채무관리의 기준으로 신규 국가채무를 전전년도 명목 국내총생산의 1만분의 35(GDP 대비 0.35%)이하 유지로 규정하여 발의·제출함

제2절 기방채무: 발행액, 총액, 상환부담 관리

□ 지자체별 발행한도제 운영

- 지방채발행 한도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는 중앙정부(행 정자치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임
 - 지자체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행정 자치부장관이 정함(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 ②)

○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의 범위

- ① 지방채발행액, ② 채무부담행위액, ③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보증 채무부담행위책임액), ④ 지방자치단체가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준공 후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순수 지방비로 지급해야 할의무가 확정된 임대료 잔액, ⑤ 우발채무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O 산정기준

- 지자체별 발행 한도액은 '지방채자율발행가능지수'와 '관리채무상환비율'
 의 기준으로 산정함. 회계범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함
- 지방채자율발행가능지수는 1에서 경상일반재원 대비 지방채발행총액한도액
 산정의 채무(일반채무, BTL임차료, 우발채무) 비율을 제(除)하여 산정함
- 관리채무상환비율은 미래 4년간 일반재원수입 대비 순지방비로 상환할 관리채무액의 비율로 산정함

지방채 지율발행 가능지수=1- 일반채무(결산)+BTL임차료(결산)+우발채무(50%) 경상일반재원(결산)

- · 일반채무 = 지방채+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 확정액의 잔액기준 ※ 이자 제외
- · BTL 임차료 = 준공 후 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물에 대해 결산일 기준으로 향후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생긴 총액 중 수지방비로 지급할 금액
- · 우발채무 =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것(예산외 의무부담)으로서 보증·협약 등에 따라 자치단체 채무 등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함
- · 경상일반재원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경상적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통합결산시 적용되는 세입과목

- O 연도구분: 한도액 산정 기준연도는 한도액산정 기초자료의 결산 다음연도부터 4개 년간 * 예. 2016년 한도액 산정시 미래4년은 '15~'18년
- O 관리채무: 일반채무 + BTL임차료 총액
- O 평균 관리채무상환액 및 평균 경상일반재원 수입액 계산식
- 미래4년 상환할 평균 채무액: [미래 4년('15~'18) 관리채무상환액]÷4년
- \cdot 매년 6.30 현재 지방채무 잔액을 기준으로 미래 4년 관리채무상환액 산정
- 이자액은 과거 4년 평균 이자액을 미래 4년간 관리채무상환액에 합산
- 평균 경상일반재원 수입액: [미래 4년('15~'18) 경상일반재원 수입액] ÷ 4년
- 직전 연도의 경상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 경상일반재원 평균 증가율을 적용
- O 미래 상환할 관리채무액에 조기상환액은 포함되지 않도록 산정

자료: 행정자치부(2015: 8)

O 계층별로 차등화 된 한도액 설정

- 특별·광역시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도·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시·군, 구의 계층별로 발행가능비율을 차등 부여함
- '관리채무상화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음
- 최종적으로 지자체별 '지방채자율발행가능지수'에 '계층별지방채발행가능 비율'과 경상일반재원을 곱하여 산출(기본한도액)

- 차환의 경우 해당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이내를 별도한도액으로 간 주하고, 시도의 경우는 지역개발공채와 도시철도공채 발행예상액을 승인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만큼 한도액을 추가함(별도한도액)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한도액 산정 기준

	구 분	특·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도	도 및 인구100만 이상의 대도시	시·군	구		
총	기본 한도액(A)	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 × 계층별	^별 발행가능 비율	× 경상일반재원		
총한도액	지방채자율발행 가능지수	1 – {(일반채무(결산)+BTL임차료(결산)+우발채무(50%))/경상일반 재원(결산)}					
A +	지방채발행가능 비율	10%	8%	5%	2%		
B	별도 한도액(B)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자료: 행정자치부(2015: 9)

□ 지자체별 총액 및 상환부담 관리

-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 통하여 지자체별 채무총액, 상환부담을 관리함
 - 2012년부터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모니터 링 결과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재정진단 및 진단결과에 따른 채무감축 등 이 포함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시행토록하고 있으며, 그 이행상황을 점검함
- 지자체별 채무총액관리는 예산 대비 채무총액의 비율인 예산대비채무비율 로 관리하며, 상환부담의 관리는 일반재원 대비 채무상환액의 비율인 채무 상환비비율로 관리함⁴⁾
 - 예산대비채무비율은 25%부터 관리하며, 채무상환비비율은 12%부터 관리하며, 각각 40% 초과, 17% 초과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4) 2019}년 1월 1일부터 현재의 일반채무가 관리채무로 전환될 예정임

재정위험 수준 모니터링 기준

관점	재정지표	「주의」	「심각」
채무 관리	예산대비채무비율	25% 초과	40% 초과
세구 된다	채무상환비비율	12% 초과	17% 초과

예산대비채무비율 =
$$\frac{$$
채무총액}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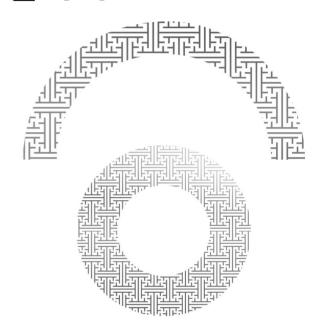
- · 채무총액: 일반채무 + BTL임차료 총액 중 순지방비로 지급할 금액
- · 회계범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 채무상환액: 순수지방비로 상환한 금액
- 일반재원: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 회계범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자료: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규정(훈령 제66호, 2016.3.15.) 참조

제3장 외국의 지방채무관리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주요국의 지방채관리제도



제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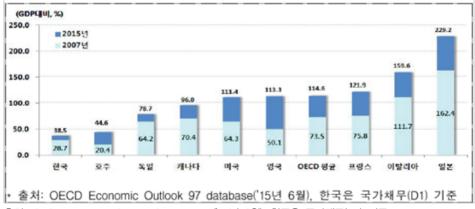
외국의 지방채무관리제도

제1절 ¹ 개요

□ 주요국의 국가채무

- OECD 평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07년 73.5%에서 2015년 114.6% 로 41.1%p 증가하는 등 주요 선진국의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함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2007년 28.7%에서 2015년 38.5%로 증가하였음
 -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의 경우는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초 과하고 있음
 - 국가채무비율의 숫자로는 우리나라가 매우 낮지만, 대외의존도 등 외부충 격에 약한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하여 재정건전성 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있음

<금융위기 이후(2007~2015년) 국가채무 증가 국제비료>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97 database(15년 6월), 한국은 국가채무(D1) 기준

□ 지방채무 한도기준

- 지방채발행한도제는 목적과 대상이 신용위험의 측정과 다르기 때문에 객관 적이고, 산출이 용이한 소수의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World Bank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채승인제를 운용하든, 총액한도제를 운용하든 유량(flow)과 저량(stock) 개념의 지표를 혼용하고 있음
- 유량 개념의 지표는 총세입 또는 경상세입 대비 15%~25% 정도를 사용하며 저량 지표는 자산가치, 총세입, 일반재원, 경상세입 등으로 다양함

<표 3-1> 주요 국가의 지방채 한도기준

국가	지방채발행(stock) 기준	지방채상환(flow) 기준	
일본	없음	일반재원의 20% 이하	
미국	재산세 과표(자산평가액) 기준	없음	
이탈리아	자체세입의 25%이하	없음	
스페인	없음	총세입의 25% 이하	
덴마크	없음	연 투자사업비의 25% 이내	
오스트리아	없음	예산의 1/3이하	
영국	없음 (지방채잔고상한제)	기본 채무승인액	
독일	없음	세입의 1/7 이하	
브라질	총세입의 27%이하	총세입의 15%이하	
에스토니아	일반재원의 60%이하	일반재원의 20%이하	
폴란드	총세입의 60%이하	총세입의 15%이하	
루마니아	경상세입의 20%이하 단기채는 5%이하	없음	
러시아	총예산	총세출의 15%이하	
슬로바키아	경상세입의 60%이하	경상세입의 25%이하	

자료 : 조기현·하능식(2008: 54), 한국지방재정학회(2012:120, Ma, Jun(2001)를 토대로 작성함

- 이들 지표들의 특성과 장·단점에 대하여 Jun, Ma(2001)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음
 - 첫째, 상환액 기준 지표들은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을 파악하는데 용이
 - 둘째, 채무잔고를 활용한 지표들은 중장기 채무부담능력을 측정하는데 유용
 - 셋째, 재정적자 혹은 재정수지는 현재 지방채발행수요를 파악하는 지표이
 며 미래 지방채발행수요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
 - 넷째, 우발채무는 고려해야 할 요소이긴 하나 미래 파산위험을 과대 평가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활용

□ 국채와 지방채 비중(IMF 통계 기준)

- GDP 대비 국가채무는 일본(230.55%), 이탈리아(139.23%), 캐나다(115.41%), 프랑스(110.97%), 영국(101.97%) 등이 과도한 편이며 일반적으로 50%를 상회함
- 한국, 스웨덴, 호주는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중은 50% 미만이며,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37.79%임
- 우리나라의 경우 IMF 채무통계 기준으로 한국은 국가채무 462.2조원으로 중앙정부채무 414.5조원, 지방채무 47.7조원임
 - 2012년 GDP(1,222.81조원)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8%, 중앙 33.9%, 지 방 3.9%임

<표 3-2> 주요국의 채무 및 GDP 대비 비율(2012회계년도 기준)

(단위: 십억달러)

국가별 GDP(A)		채무액			GDP 대비 채무비율(%)			
국/[월	GDP(A)	계(B)	중앙(1)	주(2)	지방(3)	B/A	(1)/A	{(2)+(3)}/A
핀란드	256.71	162.23	135.00		27.23	63.19	52.59	10.61
프랑스	2,681.42	2,975.62	2,711.28		264.34	110.97	101.11	9.86
독일	3,543.98	3,049.80	1,951.05	915.03	183.73	86.06	55.05	31.00
이탈리아	2,072.82	2,885.95	2,633.83		252.13	139.23	127.06	12.16
일본	5,957.25	13,734.29	11,503.99		2,230.30	230.55	193.11	37.44
한국	1,222.81	462.16	414.46		47.70	37.79	33.89	3.90
스페인	1,339.95	1,262.68	894.21	286.92	81.54	94.23	66.73	27.50
스웨덴	543.88	270.95	200.67		70.28	49.82	36.90	12.92
영국	2,646.00	2,698.10	2,546.74		151.36	101.97	96.25	5.72
호주	1,537.48	969.73	624.18	326.67	18.88	63.07	40.60	22.48
캐나다	1,824.29	2,105.42	973.86	963.17	168.39	115.41	53.38	62.03

주: 1. 채무정보: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2013(채무는 IMF 기준)

^{2.} GDP: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3.} 환율정보: http://www.ukforex.co.uk/forex-tools/historical-rate-tools/yearly-average-rates

^{4.}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1달러당 1126.43원(년간 평균 환율)

제2절 주요국의 지방채관리제도5)

미국

- 미국의 지방채제도는 연방정부의 개입 없이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하는데, 일반적으로 일반보증채(general obligation bond)의 발행잔액을 자산평가액의 일정비율로 연동시킨 총액한도제를 운용함
- 모든 주에서 총액한도제에 의한 간접적인 규제양식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며 수익채(revenue bond)는 총액한도제 대상에서 제외함
 - 모든 주정부가 총액한도제를 도입 운용하지는 않음
 - 12개 주는 지방채 발행에 제한이 없으며 38개 주는 주법으로 2개 주는 일 반법의 형태로 총액한도제 운용
- 또한 총액한도제에 의한 규제양식이 동일하다 해도 규제의 수준에는 다소 가의 차이가 발생함
 - 14개 주는 주민투표를 통과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총액한도 이상의 추가발 행 허용
- 지방채발행에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지는 않지만 자치단 체에 대한 주정부의 규제는 존재
 - 총액한도 운용(48개 주), 기채목적 제한(32개 주), 주민투표에 의한 승인(40개 주)
 - 상환이자율 제한(24개 주), 단기차입 제한(25개 주)
- 사례 : 뉴욕주 총액한도제 설정기준(Constitutional Debt Limits)
 - 자산평가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며 상환기간 규제 및 지방의회의 승인 요구
 - 총액한도의 개념은 발행능력을 나타내는 채무여력(Debt Margin)에서 출발 하며 다음 절차를 거쳐 산정

⁵⁾ 주요국의 지방채관리제도는 조기현·하능식(2008:79-89)을 참조하여 작성함

- ① 과세가능한 부동산가치의 5개년 시가총액과 평균치를 산출
- ② 5개년 부동산가치 평균액의 7%를 채무상한액으로 설정
- ③ 특정 지방채사업의 발행액을 차감하여 채무여력 산출

회계말	과세가능한 부동산가치	주정부 최종보조율	시가총액
1998	\$500,000	.50	\$1,000,000
1999	1,000,000	.50	2,000,000
2000	1,500,000	.60	2,500,000
2001	1,750,000	.65	2,692,000
2002	2,000,000	.70	2,857,143

- 5개년 시가총액 = \$11,049,449
- 5개년 평균시가총액 = \$2,209,889
- 채무상한 \$2,209,889 X 0.07 = \$154,693
- 고속도로 채무 = -\$25.693
- 채무여력 = \$12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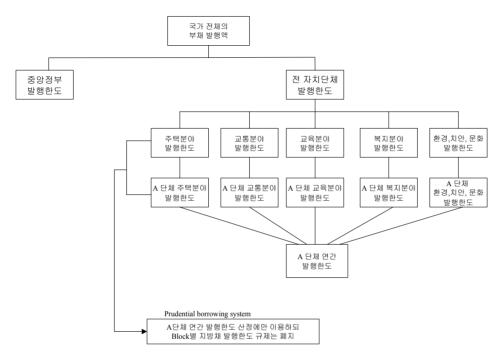
자료 : 하능식·조기현(2008: 80, New York State, Local Government Handbook, 2000) 재인용

- 상기 과정을 거쳐 Nassau County와 New York시(학군 포함)는 자산평가액의 10%, 여타 카운티는 7%를 채무한도액으로 설정

□ 영국

- 1970년대 이전에는 사업별로 발행규모를 제한하는 기채허가제를 운용하다 가 대처정권 시기에 주택, 교육, 교통, 복지, 도시대책, 기타 6개 분야로 구 분하여 각 분야별로 발행한도액을 설정한 capping제를 도입하였음
- 그러나 지방재정의 자율성 신장과 책임성의 조화를 지향한 2003년 지방정 부법(Local Government Act 2003)에 의거하여 자치단체의 기채자율권을 확 대하는 방향으로 지방채제도를 개선하였음

- 이에 따라 2004년부터 block별 발행제한을 폐지하고 기채자율권을 확대한 자체발행규제(Prudential Borrowing System)를 도입하였음
 - block별 한도액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채시장의 중 추기관으로 기능하는 PWLB가 법적 혹은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거하 여 느슨한 수준에서 관리
 - 연간 발행한도, 발행조건, 상환방법, 적채사업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PWLB
 는 대부분의 지방채를 인수
- 공공사업융자위원회(PWLB; public works loan board)는 자치단체에 융자할 목적으로 1875년 공공사업융자법(public works loan act 1875)에 의해 설립 하였으며 지방채의 90%를 인수하는 실질적인 지방채은행의 역할을 수행함
 - PWLB의 융자재원은 국가대부기금(national loans fund)을 통하여 국채로 조달
 - − 2002~2003 회계연도에는 지방채 발행물량의 88%를 융자
- 따라서 영국의 자치단체는 연간 전체적인 발행한도만 준수하면 사실상 자 유롭게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음



<그림 3-1> 영국의 지방채발행한도제

자료: 하능식·조기현(2008: 82)

□ 캐나다

- 자치단체는 예산의 수지균형원칙을 충족시켜야 하며 지방채 발행도 주정부 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주정부는 황금률을 적용하여 자본투자사업에 한하여 지방채 발행을 승인
- 일부 주에서는 총액한도제를 적용하고 있음. 한도기준은 경상예산, 재산평 가액, 조세수입의 일정비율임
- O Ontario주는 OMEIFA(Ontario Municipal Economic Infrastructure Financing) 가 지방채 전반에 대한 관리기능을 수행함

- OMEIFA는 온타리오주 지역경제 및 공공투자사업을 조정하고 있는바, 지역SOC 구축과 지역경제의 활력유지를 목적으로 연방정부의 보조금, 민자유치, 지방채발행 등 다양한 형태의 재원조달 및 투자우선순위 조정기능을수행
- 온타리오주 지방채정책은 주의회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기채사 업의 추진은 OMEIFA가 수행
- 온타리오주의 자치단체는 광역단체(regional municipalities와 county)와 기초단체(city, town, township)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Municipal Act)에 의거하여 다소 상이한 관리기준이 적용됨
 - 광역단체는 자본투자사업에만 지방채발행을 허용
 -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의 기채승인하에 지방채발행이 가능
- 자치단체는 매년 발행한도 규제를 받음(annual repayment limit)
 - (채무상환비/자체수입) 비율의 25%를 초과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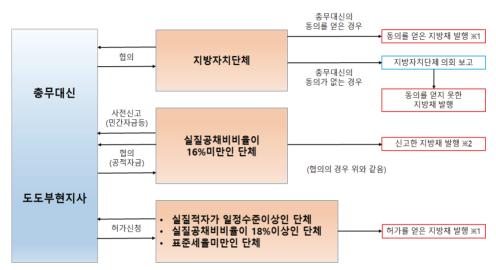
□ 독일

-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은 주정부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일임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치의 지방채는 자본계정 내에서 발행해야 하며 발 행물량은 매년 주정부가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상한액을 규제
 - 구체적으로 투자지출, 투자촉진, 차환채 용도로 발행해야 함
- 통상 지방채 총액은 주정부가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승인 과정에서 통제하며 자체세입의 1/7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행물량을 허가하는 포괄허가 제가 적용됨
 - 따라서, 독일의 포괄허가제는 지방채잔고 기준이라기보다는 매 회계연도
 당해 자치단체의 연간 발행 상한액이 됨

- 포괄허가제는 개별 투자사업이 아니라 재정운영기조, 자치단체 재정여건,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계정내에 발행가능한 총액으로 허 가함
- 헷센주의 경우 5개년 재정계획에 포함된 세수동향이나 경상회계 상황, 적립 금잔고, 차입금 상황 등으로 허가액을 판단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세출삭 감이나 투자억제 등의 조건을 추가하기도 함
- 그러나 모든 주정부가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총액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며 최근 Nordrhein-Westfalen주는 이러한 허가제도를 폐지하였음

□ 일본

- 잔액(stock)을 기준으로 지방채발행을 통제하지는 않고 있음
 - 지방채상화(flow) 정도를 통해 발행을 규제하고 있음
- 지방채 사전협의·허가제
 - 지방채발행의 원칙금지에서 원칙자유로 전환함
 - 2004년도까지 국가 또는 도도부현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지방채를 발행할수 없었으나, 지방의 자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허가제에서 협의제로 전환
 - 2005년도부터 사전협의제로 변경



<그림 3-2> 일본의 지방채 발행기준 및 절차

- ※ 1 총무대신 등의 동의(허가)있는 지방채에 대해.
 - 공적 지금 충당
 - 원리상환금의 지방재정계획에 산입
- ※ 2 신고한 지방채(민간자금 등) 중 협의는 동의의 경우로 인정
 - 원리상환금의 지방재정계획에 산입

자료: 남황우(2016)

○ 사전협의, 허가의 기준

- ◆ 실질공채비비율: 실질공채비비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채비가 재정에 주는 부담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임
- 대상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회계포함), 일부조합+광역연합포함.
- 산식: {공채비상당액에 충당된 일반재원-보통교부세로 조치되는 공채비/(지방세+보통교부세)-보통교부세로 조치되는 공채비상당액}(지방재정법에 명시)
 - 혐의단체: 18%까지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도도부현·지정도시는 총무 대신, 시정촌·특별구는 도도부현지사와 협의해야 됨

-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공적자금으로 지방채소화 가능
- 동의를 얻어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상화금은 지방재정계획에 산입
- 동의를 얻지 못하고 발행하는 지방채는 미리 의회에 보고의무

- 허가단체

- 적자단체, 실질공채비비율이 높은 단체, 적자공기업 등
- 표준세율 이하를 적용하는 단체
 →공공시설의 건설사업의 경비에 충당하는 재원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 18%-25%인 지방자치단체 : 일반적 허가단체
 - 공채비부담적정화계획 수립을 전제로 일반적인 허가기준에 따라 허가
- 25%-35%인 지방자치단체 : 일반단독사업채 발행금지
 - 재정건전화계획수립(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2009년 4월시행)
 - 조기건전화단체
- 35%이상인 지방자치단체 : 지방채발행금지
 - 일반공공사업, 교육/복지시설 등에 관한 지방채발행금지
 - 재정재생계획(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2009년 4월시행)

O 사전신고제 도입

- 2012년도부터 지역의 자주성과 자립성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지방채협의제도를 일부 개정함
 - 재정상황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방자치단체(실질공채비비율 16% 이하)는 원칙적으로 협의가 아닌 사전신고의 대상으로 변경함
 - 민간 등 자금채의 기채에 대한 협의는 불필요하게 됨

일본의 지방채관리제도 변화

■ 지방분권화 정책의 일환으로 2005년 4월부터 허가제에서 협의제로 전환

(실질공채비비율) 18%

협의	조기시정조치로서의 지방재정법 허가
업의	공채비부담적정화계획

■ 2009년 4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시행

(실질공채비비율) 18% 25% 35%

취이	조기시정조치로서의 지방재정법 허가		건전화법허가
협의	공채비부담	재정건전화계획	재정재생계획
	적정화계획	(조기건전화)	(재정재생)

- 2012년 4월 <u>사전신고제 도입</u>
- 실질공채비비율이 16%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는 사전 신고로 지방채발행
- 공적자금의 인수 여부를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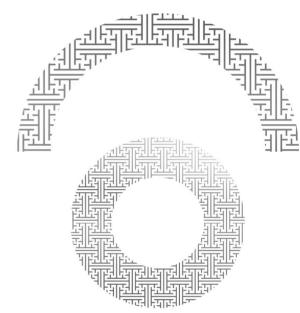
(실질공채비비율) 16% 18% 25% 35%

사전신고	처이	조기시정조치로서의 지방재정법 허가		건전화법허가
(공적자금 협의)	협의	공채비부담 적정화계획	재정건전화계획 (조기건전화)	재정재생계획 (재정재생)

자료: 남황우(2016)

제4장 우리나라 지방채무 총량관리 방안

제1절 사전검토 요소 제2절 지방채무 총량규모 설정 제3절 지방자치단체별 안분



제4장

우리나라 지방채무 총량관리 방안

제1절 시전검토 요소

- □ 국가채무
 - 국가채무는 2015년 기준 591.5조원, GDP(1.560.7조원) 대비 37.9%임
 - 국가채무 내 지방정부 순채무는 34.9조원임
 - 2015년 국내총생산은 1,560.7조원임
 - 2014년 기준 국가채무는 533.2조원, GDP(1,485.2조원) 대비 35.9%임
 - 국가채무 내 지방정부 순채무는 30.1조원임
 - 2014년 국내총생산은 1,485.2조원임
 - ※ 2014년 기준 일반정부 채무 620.6조원(GDP 대비 41.8%, 공공부문 채 무 957.3조원(GDP 대비 64.5%)
 - 국가채무의 기준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범위이며, 채무는 중 앙정부의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순채무임
 - '지방순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차입금, 지방채증권) 중 중앙정부 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제외한 것을 말함

<표 4-1> 국가채무 추이

(단위: 조원, %)

		국가	중앙		국	채			국고	지방
연도	국가 채무 (A+B)	채무 GDP 대비 (%)	정부 채무 (A, a+b+c)	합계 (a)	국고 채권	국민 주택 채권	외평 채권 (외화)	차입금 (b)	채무 부담 행위 (c)	정부 순채무 (B)
2002	133.8	17.6	126.6	103.1	55.6	25.7	4.8	20.7	2.8	7.1
2003	165.8	20.4	158.8	140.6	81.5	30.1	4.8	15.8	2.4	6.9
2004	203.7	23.3	196.1	182.9	123.1	32.4	5.3	10.7	2.5	7.6
2005	247.9	27.0	238.8	229.0	170.5	37.1	6.1	7.6	2.2	9.2
2006	282.7	29.3	273.2	264.3	206.8	42.9	6.6	6.4	2.5	9.5
2007	299.2	28.7	289.1	280.5	227.4	43.3	6.7	5.7	2.9	10.1
2008	309.0	28.0	297.9	289.4	239.3	44.9	5.2	5.3	3.2	11.0
2009	359.6	31.2	346.1	337.5	280.9	48.3	8.3	5.4	3.2	13.5
2010	392.2	31.0	373.8	367.2	310.1	49.0	8.0	3.5	3.1	18.4
2011	420.5	31.6	402.8	397.1	340.1	48.9	8.1	2.5	3.3	17.6
2012	443.1	32.2	425.1	420.0	362.9	49.5	7.6	2.3	2.8	18.0
2013	489.8	34.3	464.0	459.5	400.7	51.3	7.5	1.9	2.7	25.7
2014	533.2	35.9	503.0	498.1	438.3	52.8	7.0	2.6	2.4	30.1
2015	591.5	37.9	556.5	551.5	485.1	59.3	7.1	3.3	1.7	34.9

(국가채무)

- 1. 국가재정법 및 '86 GFS(현금주의)에 따라 산출하며,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함
- 2.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회계·기금을 포괄하나, 중앙정부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기금은 제외함
- 3. 국가채무는 국가채무 관리 목표 설정 등에 활용하며, 국가채무관리계획 및 국가채무관리보고서는 현 행과 같이 현금주의 국가채무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국가채무 내 지방채무 범위

- 기획재정부의 국가채무 통계가 591.5조원(GDP 대비 34.9%, <표 4-1>), 595.1조원(GDP 대비 38.13%, <표 4-2>)의 집계가 있음
 - 중앙,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의 주체별로 채무가 집계된 것의 국가채무는

595.1조원인 <표 4-2>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 이를 지방채무 총량설정의 기준으로 함

- 국가채무(2015년 기준 595.1조원) 내의 지방채무 범위는 지방채(차입금, 지방채증권) 중 정부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순채무'만을 포함함
- 2015년 국가채무 내 지방순채무(지방채 중 정부차입금 제외)는 34.9조원, GDP 대비 2.24%
 - 지방재정 순채무는 25.8조원, GDP의 1.66%
 - 교육재정 순채무는 9.1조원, GDP의 0.58%
 - 지방재정 대 교육재정의 비중은 73.9% 대 26.1%
- 2015년 지방총채무(지방채무 슌계)는 38.9조원, GDP 대비 2.49%
 - 지방재정 총채무는 28조원, GDP의 1.79%
 - 교육재정 순채무는 10.9조원, GDP의 0.70%
 - 지방재정 대 교육재정의 비중은 71.98 대 28.02%

<표 4-2> 국가채무 내 지방채무(결산기준)

(단위: 조원, %)

기법	2014년		2015년	
구분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국가채무	533.2	35.90	595.1	38.13
- 중앙정부	503	33.87	560.2	35.89
- 지방정부순채무	30.1	2.03	34.9	2.24
(총채무)	(32.7)	(2.20)	(38.9)	(2.49)
• 지방재정순채무	25.4	1.71	25.81)	1.66
(총채무)	(28)	(1.89)	$(28)^{2)}$	(1.79)
• 교육재정순채무	4.7	0.32	9.1	0.58
(총채무)	(4.7)	(0.32)	(10.9)	(0.70)

주: 1) 지방채(차입금, 지방채증권)에서 중앙정부에 갚아야 할 공자기금, 기타정부자금의 차입금(증서차 입)을 제외한 금액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및 행정자치부 채무통계 자료를 근거로 보완

²⁾ 총채무는 지방채(차입금, 지방채증권),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이며, 지방채증권 중 지역개발공채의 경우는 중복분을 제외한 순계로 산정한 것임

□ 지방채무 유형(지방교육재정 제외): 2015년 지방채무 잔액 기준

(단위: 조원, %)

케ㅁ 사저기	지방채무 산정시				
채무 산정시 일1	채무	alaləli 🗆			
정부 순채무 순채무(순계)	총채무(총계)	관리채무			
25.76 27.95	31.11	34.45			
- 지방채(27.69) · 차입금(10.10) · 지방채증권(17.59) · 치막부담행위(0.14) - 보증채무이행책임액 (0.12) (지역개발공채 3.17조원	- 지방채(30.86) · 차입금(10.10) · 지방채증권(20.76) - 채무부담행위(0.14) - 보증채무이행책임액 (0.12) (지역개발공채 3.17조원	총채무(31.11)+ BTL 임대료 잔액(순수지방비 부담액)(3.34)			
(0.12)	(지역개				

① 지방채 : 순계 27.69조원(총계 30.86조원)

	지방채	순계	총계
	합계	27.69	30.86
	소계	10.10	10.10
	공자기금*	0.76	0.76
	기타정부자금*	1.17	1.17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3.17	3.17
	청사정비기금	0.26	0.26
	공제회지역개발지원금	0.08	0.08
	민간금융자금	4.67	4.67
	소계	17.59	20.76
	모집공채	2.58	2.58
지방채증권	도시철도공채	5.67	5.67
	지역개발공채	<u>9.34</u>	<u>12.51</u> **
	기타매출공채	0	0
	외채 및 기타	0	0

- 주: 1. *'공자기금' 및 '기타정부자금'은 지방정부채무 중 중앙정부에 상환해야 할 채무로, 국가채무관 리에서는 이들을 제외한 '지방순채무' 산정하여 국가채무에 포함
 - 2. 국가채무 산정시 '지방정부 순채무'(25.76조원)는 지방채무 순계(27.69조원)에서 지방정부가 중 앙정부에 갚아야 할 채무(1.93조원, '공자기금' 및 '기타정부지금')를 제외함
 - 3. **지역개발공채는 3.17조원이 중복됨

② 채무부담행위: 0.14조원

③ 보증채무이행책임액: 0.12조원

- ④ BTL임차료 잔액(순수지방비부담액): 3.34조원
- ⑤ 우발채무: 3.98조워
 - 지방채무 잔액에는 포함하지 않고, 지방채발행한도액 결정시 50% 고려
- ⑥ BTO 사업관련 재정부담액(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8.19조원
 - 지방채무잔액 및 지방채발행한도액 산정 시 활용하지 않음. 지방채무에 포 함하지 않음
- □ 지방재정의 실사용액(2016년 당초예산 기준)
 - 2016년 국가예산은 중앙 55.1%, 지방자치단체 34.4%, 교육청 10.5%임
 - O 하지만, 실사용액은 중앙 41.9%, 지방자치단체 43.9%, 교육청 14.2%임
 - 국가예산의 44%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음

<표 4-3> 국가예산 및 실사용액 현황

(단위: 억원, %)

그님		ટ ્રી-ગો		
구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합계
예산규모(A)	2,957,207	1,845,825	562,001	5,365,033
(비율)	(55.10%)	(34.40%)	(10.50%)	(100%)
재정 주체간 이전 재원(B)	△1,234,474	△37,302	21,279	
(국가 → 지자체)	(△820,259)	(70,541) ①	(-)	
(국가 → 지방교육)	(△414,215)	(-)	(14,034) ②	
(지방자치단체 → 지방교육)	(-)	(△107,843)	(6,975) ②	
예산실사 용규 모	1,722,733	1,808,523	583,580	4,114,536
(A+B)	(41.90%)	(43.90%)	(14.20%)	(100%)

- ① 지자체의 중앙정부 이전수입 세입예산 계상 시차 발생으로 인한 과소 계상액(7.1조) 반영
- ② 교육청의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자체 이전수입, 세입예산 계상 시차 발생으로 인한 과소 계상액(중앙이전 1.4조, 지방이전 0.7조) 반영

* 기금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지방채무 및 지방채발행한도액

- 지방채무는 일반채무, 관리채무, 우발채무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통상 지방채무는 일반채무의 순계(총채무 중 중복부분 제외)를 의미함
 - 관리채무는 일반채무의 총계(총채무)에 BTL임차료 잔액(순수지방부담)를 포함. 지자체별 지방채발행한도액을 설정할 시 지방채발행가능지수 및 관 리채무부담비율의 지표에 활용됨
 - 우발채무는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예산외의무부담(보증·협약 등) 등 지자체의 채무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함. 이 또한 지자체별 지방채발행한도액을 설정할 시 지방채발행가능지수 및 관리채무부담비율의 지표에 활용됨
 - 2015년도 기준으로 통상적인 지방채무(순계)는 27조 9,457억원이며, 중복 분이 포함된 총채무(총계)는 31조 1,119억원이며, 총채무에 BLT 임차료 잔액(순수지방비부담)가 포함된 관리채무는 34조 4,509억원임
 - 관리채무와 우발채무는 2013년도부터 산출하고 있음

<표 4-4> 지방채무의 범위와 규모

(단위: 억원, %)

	일반체	일반채무 관리채무		우발채무
연도별	순계 (총채무-중복채무)	총계	(총채무+BTL임차료)	(보증, 예산외부담)
2011	289,993	317,526	-	-
2012	271,252	312,073	-	-
2013	285,886	326,944	362,064	54,213
2014	280,017	319,584	358,094	45,888
2015	279,457	311,119	344,509	39,793

○ 지방채발행한도액의 지방채무 범위는 지방채,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이 행책임액, BTL 임차료 잔액(순수지방비부담), 우발채무의 50%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음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별도한도액으로 산정되지만, 별도한도액은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일정요건충족 차환채로 발행된 것을 추가하는 것임. 여기서 지역개발채권은 지방채무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며, 차환채는 총량에 변화를 주지 않음. 별도한도액은 추후에 그만큼 발행한도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함
- 현재와 같은 지자체별 지방채발행한도액을 정할 시 기본한도액과 별도한 도액으로 지방채발행한도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2013년부터 시행됨

<표 4-5> 연도별 지방채발행 한도액

(단위: 억원. %)

연도별	기본한도액
2013	40,663
2014	41,426
2015	40,596
2016	48,603
2017	56,740
5년 한도총액	228,028
평균 증가율	9.08

□ 지방채무관리 기준(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의 모니터링 기준)

-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의 모니터링기준에서는 채무지표로 예산대비 채무비율, 채무상환비비율의 지표에 의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주의, 심각 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 예산대비채무비율: 예산 대비 채무잔액의 비율임. 회계범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이며, 채무는 지방채(차입금, 지방채증권), 채무부담행 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임
 - 채무상환비비율: 일반재원 대비 지방채무 상환액의 비중으로 채무상환액
 은 순수지방비로 상환한 것만 해당함. 회계범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회계이며, 채무상환 및 일반재원은 과거 4년, 미래 4년의 평균을 사용함

- 채무상환은 지방채(차입금, 지방채증권),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 액의 상환액임
- 따라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의 채무관리기준에서는 채무범위가 지방채(차입금, 지방채증권),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임
 - · 예산대비채무비율의 경우 25%기준 초과시 행정자치부는 해당단체에 지 방재정건전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도·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단 체는 스스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40% 초과시에 는 재정건전화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을 해야 하며 재정위기단체 로 지정할 수 있음

재정위기 채무관리 기준

재정지표	「주의」	「심각」
예산대비채무비율	25% 초과	40% 초과
채무상환비비율	12% 초과	17% 초과

- 또한 지방채발행한도제 운영에 있어서 관리채무상환비비율이 20%를 초과 하면 지방채발행한도액의 기본한도액을 '0'으로 처리하고 있음
 - 관리채무상환비비율: 미래 4년 평균 경상일반재원 대비 미래 4년 평균 순수 지방비로 상화해야할 관리채무상화액의 비중임
 - 여기서는 재정위기 산전경모시스템의 채무범위보다 넓은 BTL 임차료 상 화액을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재정성장율

- 2010-2015년까지의 지방재정 성장률은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략 5% 내외임
 - 당초예산 평균 성장률 4.40%
 - 최종예산 평균 성장률 5.99%

<표 4-6> 지방재정 성장율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당초예산	139.9	141	151.1	156.9	163.6	173.3	
(증가율)	-	0.79	7.16	3.84	4.27	5.93	4.40
최종예산	149.8	156.3	167	170	180.9	200	
(증가율)	-	4.34	6.85	1.80	6.41	10.56	5.99

○ 최종예산의 성장률을 기준으로 지방재정이 성장한다고 하면, 이를 기준으로 지방채무도 매년 5.99%씩의 성장을 가정할 수 있음

제2절 기방채무 총량규모 설정

- 지방채무 총량설정 기준은 국가채무관리 목표액 기준으로 설정, 지방채무 자체관리 목표액 기준으로 설정, 지방재정위기 관리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 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3가지 기준으로 지방채무 총량을 결정하고, 2015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추정하는 시뮬레이션을 거쳐 연도별 총량 규모를 설 정하고자 함
- 기준별 총량규모를 설정함과 동시에 각 기준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지방채 무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1. 국가채무 관리목표액 기준으로 설정

가. 전제

- 국가채무의 관리기준은 GDP의 45% 이하임
 -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지방채무는 지방채(차입금, 지방채증권) 중 중앙정부 차입금, 즉 중앙정부에 갚아야 할 채무는 제외한 '지방순채무'만을 포함하고 있음
 - · 행정자치부에서 집계하는 지방채무의 범위 중 최협의의 지방채(지방재 정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방채: 지방채증권, 차입금)만을 국가채무에 포함함. 그리고 이 중에서도 중앙정부차입금(공 자기금, 기타정부자금)은 제외한 금액만을 국가채무에 포함하고 있음
 - 재정건전화법 제6조(국가채무관리)에 따른 국가채무의 지방채무는 ① 지 방채(지방채증권, 차입금), ② 채무부담행위, ③ 보증채무이행책임액으로 하고 있음

- 하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집계하는 지방채무에는 이들 외에도 ④ BTL임차료 잔액(순수지방비 부담)까지 포함하는 '관리채무'의 기준도 있음. 또한지방채발행한도액 결정시에는 여기에(①+②+③+④) ⑤ 우발채무(보증 및협약 등 예산외부담)의 50%까지를 포함하여 산정함
- 국가채무 관리기준 GDP 대비 45%에서의 지방채무는 다음의 3가지 범위로 설정될 수 있을 것 같음
 - 지방순채무
 - ·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가채무총량 산정시 사용
 - ※ 국가채무통계(2015년) 집계시 지방의 지방채(차입금, 지방채증권의 27.69조원 중 중앙정부 차입금을 제외한 25.76조원)만 포함하고, 채무부담행위(0.14조원), 보증채무이행책임액(0.12조원)은 규모가 작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지방총채무
 -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지방총채무로 표시하고 있음
 - ※ 지방총채무란 지방의 일반채무(지방채+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 임액)의 순계(지역개발공채 등의 중복분 제외)를 말함
 - 재정건전화법상 지방채무
 - 재정건전화법의 지방채무는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임
 - ※ 재정건전화법의 지방채무범위는 위의 지방총채무와 범위가 동일함
- O 국가채무의 구성과 비중
 - 앞의 <표 4-2>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국가채무는 2015년 기준 595.1조 원임. 채무의 주체별 구성을 보면 중앙 561.2조원, 지방재정 25.8조원, 지 방교육재정 9.1조원임. 그 비중을 보면 중앙 94.3%, 지방채무 4.34%, 지방 교육채무 1.53%임
 - 여기서 지방채무는 '지방순채무'임

국가채무의 구성과 비중

(단위: 조원, %)

기비	규모(조원)	비중(%)	
구분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국가채무	533.2	595.1	100	100
- 중앙정부	503	560.2	94.35	94.14
- 지방정부	30.1	34.9	5.65	5.86
• 지방재정순채무	25.4	25.8	4.76	4.34
• 교육재정순채무	4.7	9.1	0.88	1.53

2015년 '지방순채무'는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하여 34.9조원으로 GDP 비중은 2.24%임. 주체별로 보면 지방재정 1.66%, 지방교육재정 0.58%임

지방채무의 GDP 비중

(단위: 조원, %)

			규모(조원)		(GDP 대비(%)
구분	GDP	계	지방재정	지방교육 재정	계	지방재정	지방교육 재정
2014	1,485.2	30.1	24.4	4.7	2.03	1.71	0.32
2015	1,560.7	34.9	25.8	9.1	2.24	1.66	0.58

- '지방순채무' 중 지방재정 대 교육재정의 비중은 73.9% 대 26.1%임

지방채무의 주체별 규모와 비중

(단위: 조원, %)

구분	규모([조원]	비중(%)		
一十七	2014	2015	2014	2015	
지방순채무	30.1	34.9	100	100	
- 지방재정	25.4	25.8	84.39	73.93	
- 지방교육재정	4.7	9.1	15.61	26.07	

나. 국가채무비율 45% 기준으로 설정하는 안(지방순채무 기준)

- 현행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38.1%)을 국가채무관리기준 45%로 연장
 - 지방채무비율도 국가채무비율 45%에 비례하여 연장할 경우,
 - 현행 GDP 대비 지방채무비율 2.24%는 국가채무비율 45%로 연장할 경우
 지방채무비율은 2.64%로 됨(2015년 기준)
 - 이를 2015년 GDP(1,560.7조원)에 적용할 경우 지방채무는 41.3조원이 됨

국가채무비율 45% 적용 지방채무 규모 및 GDP 비중: 지방순채무

(단위: 조원, %)

			현행기준			국가채무비율 45% 기준		
구분	GDP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	GDP 대비 지방채무 비중	지방 채무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	GDP 대비 지방채무 비중	지방 채무	
2015	1560.7	38.1	2.24	34.9	45	2.64	41.3	
2014	1485.2	35.9	2.03	30.1	45	3.03	45.0	

- 지방재정 채무와 지방교육재정 채무는 2015년 비중으로 배분
 - 2015년 기준 지방재정채무와 지방교육재정채무의 비중은 73.9% 대 26.1%임
 - 국가채무비율 45% 기준 지방채무총량은 41.3조원(GDP 대비 2.64%)이며, 이를 2015년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채무의 비중을 고려하며 배분하면

지방재정 30.5조원(GDP 대비 1.95%), 지방교육재정은 10.8조원(GDP 대비 0.98%)임

- 문제는 이와 같은 국가채무 집계기준으로 하면 2015년 기준 중앙정부차입 금(공자기금 0.76조원, 기타정부자금 1.17조원), 채무부담행위(0.14조원), 보증채무이행책임액(0.12조원)의 총 2.19조원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임
 - · 따라서 제외된 2.19조원을 포함할 경우 지방재정채무는 32.7조원으로 GDP 대비 2.09%가 됨

<표 4-7> 국가채무비율 45% 적용 지방재정채무와 지방교육재정채무

(단위: 조원, %)

	2015년 국가채무비율 38.13% 기준			국가채무비율 45% 기준		
구분	계 (100)	지방재정 채무 (73.9)	지방교육 재정채무 (26.1)	지방채무 (GDP 대비)	지방재정 (GDP 대비)	지방교육재정 (GDP 대비)
2015	34.9 (2.24)	25.8 (1.66)	9.1 (0.58)	41.3 (2.64)	30.5 (1.95)	10.8 (0.98)

나. 국가채무의 지방총채무로 설정하는 안(지방채무 '순계' 기준)

- 국가채무는 지방순채무로 산정함. 지방순채무란 지방채무 중 지방채(차입금, 지방채증권) 중 중앙정부 차입금을 제외한 것임. 뿐만 아니라, 지방의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을 제외한 것으로, 지방채무를 일종의 '최협의' 개념으로 산정한 것임. 여기서 제외된 지방채무도 현재는 작은 규모일지라도 지방재정 상황에 따라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때문에 지방채무는 이들을 모두 포함한 총채무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다 만 지방의 총채무는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제외한 순계로 지방채무 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5년도 지방총채무는 지방채무 28조원, 지방교육채무 10.9조원으로 38.9조 원임

- 지방순채무는 34.9조원, 지방총채무는 38.9조원으로 지방순채무 대비 11.5% 추가된 규모임
- 앞서 추계한 2015년도 지방순채무 41.3조원에 11.5%를 추가하면 지방총 채무의 규모가 추정되며, 그 규모는 4.7조원이 추가되어 46조원이 됨
- 지방총채무 46조원은 2015년 GDP의 3.0%에 해당함

국가채무기준의 지방총채무

(단위: 조원, %)

		2015년 순채무, 총채무 차이			순채무 대비 증액 추가 기준		
구분	GDP	지방 순채무	지방 총채무	차이 (총채무- 순채무)	순채무 추계	차이반영 (11.5%)	지방 총채무
2015	1560.7	34.9	38.9	4(11.5%)	41.3	4.7	46 (GDP 대비 3%)

- 지방재정 채무와 지방교육재정 채무는 2015년 비중으로 배분
 - 지방채무 46조원을 지방재정채무(73.93%)와 지방교육재정채무(26.07%)
 비중으로 나누어 산정하면 지방재정채무는 34조원, 지방교육재정채무는
 12조원의 각각 GDP 대비 2.18%, 0.77%에 해당함

<표 4-8> 지방총채무(순계) 적용 지방채무와 지방교육채무

(단위: 조원, %)

	2015년 국가채무비율 38.13% 기준			지방총채무 46조원 기준		
구분	계 (100)	지방재정 채무 (73.9)	지방교육 재정채무 (26.1)	지방채무 (GDP 대비)	지방재정 (GDP 대비)	지방교육재정 (GDP 대비)
2015 (GDP 대비, %)	34.9 (2.24)	25.8 (1.66)	9.1 (0.58)	46 (3)	34 (2.18)	12 (0.77)

2. 지방자체 관리목표액 기준으로 설정

- 가. 지방자치단체 관리채무(34.5조원) 기준으로 설정하는 안(총채무(순계)+중복 분+BTL임대료 잔액(순수지방비부담))
 - 지방자치단체 관리채무는 지방자치단체 총채무(총계, 중복분 포함)에 BTL 임대료 잔액(순수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 2015년의 관리채무는 34.5조원이며, 일반채무의 순계는 28조원임
 - 관리채무와 일반채무의 순계 간에는 6.5조원의 차이가 있으며, 관리채무가 일반채무 순계보다 그만큼 증가한 것임
 - · 2015년 일반채무 총계는 31.1조원이며, 순계는 28조원임. 총계에서 중 복분을 제외한 것이 순계인데, 이는 지역개발공채 3.17조원이 중복되어 이를 제외한 것이 순계이고 이를 포함한 것이 총계임
 - · 또한 2015년 기준 BTL임대료 잔액(순수지방비부담)은 3.34조원임
 - 지역개발공채 중복분과 BTL임대료 잔액은 년도별로 매년 증가할 가능성
 이 크지 않아, 이는 지방채무 순계 추정에 현재의 금액의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관리채무의 총량 설정은 지방총채무(순계)에 현재의 중복분과 BTL잔액을 합산하여 설정함

<표 4-9> 관리채무 총량 설정

(단위: 조원, %)

フロ	지방채무	구(총계)	BTL임대료	관리채무 총량	
구분	순계 총량	중복분	잔액	(GDP 대비)	
2015	2.4	3.17	3.34	40.5	
2013	34	6.5		(2.59)	

나. 지방채발행한도액 기준으로 설정하는 안(관리채무+우발채무 50%)

□ 전제

- 지방채발행한도액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은 채무의 가장 넓은 범위를 포 괄하는 채무총량 규모임
 - 채무범위은 지방채(차입금, 지방채증권),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 액, BTL임차료 잔액(순수지방비부담분)에 우발채무(보증, 협약 등)의 50% 를 포함함
- 지방채발행한도액을 기준으로 총량규모를 설정할 경우 중요한 것은 상환조 건 및 차입선임
 - 2015년 기준 지방채상환기간은 5-9년이 74.01%로 가장 많으며, 10-15년은 20.24%임. 따라서 현재 지방채무잔액기준 대부분의 상환기간은 평균 10년 으로 보아도 타당함

상환기간별 지방채 잔액(2015년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합계	1-4년	5-9년	10-15년	16년이상
계	308,575	10,006	228,374	62,452	7,743
비중	100	3.24	74.01	20.24	2.51

- 또한 우리나라 지방채는 대부분 공적자금으로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금융기간은 3년 거치 5년상환, 지역개발채권 등은 5년 거치 일 시상환임
- 현재의 지방채무잔액의 상환조건 및 차입선을 고려할 경우 평균적으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지방채 무는 5년까지는 누적되고, 10년이 되면 1/2이 상환되며, 15년이 되면 전액 상화되는 상황임

- □ 지방채발행 및 상환을 고려한 총량규모 설정
 - 현재와 같은 지방채발행한도액 설정 방식은 2013년부터 적용되었으며, 2013-2017년의 5년 동안 한도액 총액의 평균 증가율이 9.08%임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방채무의 상환 조건을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가정하여 지방채무총량을 설정하고자 함
 - 지방채발행 첫해부터 5년 동안은 발행액이 누적되고, 다음 10년 동안은 이전의 매년 발행액의 10%씩을 상환한다고 가정함. 또한 맨 처음 발행한 지방채가 전액 상환이 되는 시점이 아닌 1/2이 상환되는 시점까지를 총량의한계점으로 설정함. 즉 지방재는 매년 발행되지만 맨 처음 발행 년도부터 10년까지의 발행액은 채무잔액의 한도액으로 설정함
 -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방채무의 총량을 정할 경우 57.6조원이며, 이는 2015년 GDP 대비 3.69%임

<표 4-10> 지방채발행한도액, 상환액 기준의 지방채무 총량규모

(단위: 억원, %)

					(
연도별	기본한도액	발행누적액	상환액 (5년거치 10년 균등 상환)	지방채잔액 (GDP 대비)	비고
2013	40,663	40,663			
2014	41,426	82,089) II
2015	40,596	122,685			실제 기본한도액
2016	48,603	171,288			기근인도기
2017	56,740	228,028			
2018	61,892	289,920	4,066	285,854	
2019	67,512	357,432	8,209	349,223	- 기본한도액 추정
2020	73,642	431,074	12,269	418,805	(9.08%증가율) - 5년 후부터 10
2021	80,329	511,402	17,129	494,273	년동안 10%씩
2022	87,622	599,025	22,803	576,222 (3.69)	상환

3. 지방채무총량 시뮬레이션(2016년-2020년)

- 국가 중기재정계획(2016-2020)의 국가채무비율 40% 대 초반 관리, 재정건 전화법(안)의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유지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무총량을 2015년 기준으로 2016-2020년 동안을 추정하였음
- 채무총량의 추청은 채무기준은 ① 지방순채무 기준(30.5조원), ②지방총채 무 기준(34조원), ③ 관리채무 기준(40.6조원), ④ 지방채발행한도액 기준 (57.6조원)의 4가지로 하였음
- 방법은 2015년 기준으로 최근 당초예산 기준, 최종예산 기준, 지방채발행한 도액, 경제성장율의 최근 5년(2011-2015)의 평균 성장률 적용하였음. 최종 예산 성장율을 적용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지방순채무 기준: 2015년 30.5조원(GDP대비 1.95%)→ 2020년 40.8조원 (2.23%)
 - 지방총채무 기준: 2015년 34.0조원(GDP대비 2.18%)→ 2020년 45.5조원 (2.49%)
 - 관리채무 기준: 2015년 40.6조원(GDP대비 2.60%)→ 2020년 54.3조원 (2.97%)
 - 발행한도 기준: 2015년 57.6조원(GDP대비 3.69%)→ 2020년 77.1조원 (4.21%)

① 지방순채무 기준: 30.5조원

(단위: 조 원)

구분	평균성장률(%)	기준년도(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GDP(2011 ~ 2015)	3.22	1,560.70	1,610.95	1,662.83	1,716.37	1,771.64	1,828.68
당초예산(2011 ~ 2015)	4.4	30.50	31.84	33.24	34.71	36.23	37.83
GDP대비 비율(%)		1.95	1.98	2.00	2.02	2.05	2.07
최종예산(2011 ~ 2015)	5.99	30.50	32.33	34.26	36.32	38.49	40.80
GDP대비 비율(%)		1.95	2.01	2.06	2.12	2.17	2.23
지방채발행한도액(2013 ~ 2017)	9.08	30.50	33.27	36.29	39.59	43.18	47.10
GDP대비 비율(%)		1.95	2.07	2.18	2.31	2.44	2.58
경제성장률(2011 ~ 2015)	3.22	30.50	31.48	32.50	33.54	34.62	35.74

② 지방총채무(순계) 기준: 34조원

(단위: 조 원)

	_						
구분	평균성장률(%)	기준년도(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GDP(2011 ~ 2015)	3.22	1,560.70	1,610.95	1,662.83	1,716.37	1,771.64	1,828.68
당초예산(2011 ~ 2015)	4.4	34.00	35.50	37.06	38.69	40.39	42.17
GDP대비 비율(%)		2.18	2.20	2.23	2.25	2.28	2.31
최종예산(2011 ~ 2015)	5.99	34.00	36.04	38.20	40.48	42.91	45.48
GDP대비 비율(%)		2.18	2.24	2.30	2.36	2.42	2.49
지방채발행한도액(2013 ~ 2017)	9.08	34.00	37.09	40.45	44.13	48.13	52.51
GDP대비 비율(%)		2.18	2.30	2.43	2.57	2.72	2.87
경제성장률(2011 ~ 2015)	3.22	34.00	35.09	36.22	37.39	38.60	39.84

제4장 우리나라 지방채무 총량관리 방안

③ 관리채무 기준: 40.6조원

(단위: 조 원)

© L						,	
구분	평균성장률(%)	기준년도(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GDP(2011 ~ 2015)	3.22	1,560.70	1,610.95	1,662.83	1,716.37	1,771.64	1,828.68
당초예산(2011 ~ 2015)	4.4	40.60	42.39	44.25	46.20	48.23	50.35
GDP대비 비율(%)		2.60	2.63	2.66	2.69	2.72	2.75
최종예산(2011 ~ 2015)	5.99	40.60	43.03	45.61	48.34	51.24	54.31
GDP대비 비율(%)		2.60	2.67	2.74	2.82	2.89	2.97
지방채발행한도액(2013 ~ 2017)	9.08	40.60	44.29	48.31	52.69	57.48	62.70
GDP대비 비율(%)		2.60	2.75	2.91	3.07	3.24	3.43
경제성장률(2011 ~ 2015)	3.22	40.60	41.91	43.26	44.65	46.09	47.57

④ 지방채발행한도액기준: 57.6조원

(단위: 조 원)

구분	평균성장률(%)	기준년도(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GDP(2011 ~ 2015)	3.22	1,560.70	1,610.95	1,662.83	1,716.37	1,771.64	1,828.68
당초예산(2011 ~ 2015)	4.4	57.60	60.13	62.78	65.54	68.43	71.44
GDP대비 비율(%)		3.69	3.73	3.78	3.82	3.86	3.91
최종예산(2011 ~ 2015)	5.99	57.60	61.05	64.71	68.58	72.69	77.05
GDP대비 비율(%)		3.69	3.79	3.89	4.00	4.10	4.21
지방채발행한도액(2013 ~ 2017)	9.08	57.60	62.83	68.54	74.76	81.55	88.95
GDP대비 비율(%)		3.69	3.90	4.12	4.36	4.60	4.86
경제성장률(2011 ~ 2015)	3.22	57.60	59.45	61.37	63.35	65.38	67.49

4. 지방재정위기 관리기준 설정

- 현행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의 모니터링 기준으로 채무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재정위험 관리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함
 - 재정위기 모니터링 지표 중 예산대비채무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총량
 의 한도를 관리하는 지표임
 - 이 지표에서의 채무범위는 지방채(차입금, 지방채증권),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임
-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의 예산대비채무비율 모니터링 기준으로 지방채무 총량을 설정할 경우는 앞서 제시한 '지방총채무'의 채무범위와 동일함
 - '지방총채무' 기준의 채무총량 및 자치단체별 안분액을 채무관리의 최대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총채무' 기준으로 예산과 대비하여 25%를 넘으면 재정위기(주의단체)로의 지정이 가능함
 - 따라서 예산 대비 지방채무의 비중 25%를 재정위기관리의 채무총량으로 설정이 가능함
- 2015년 4분기 기준 지방예산(284.8조원)의 25%는 71.2조원으로 이를 지방 재정위기관리 채무총량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재정주의 기준인 채무총량은 71.2조원으로 GDP대비 4.56%임. 예산대비채 무비율 25%는 지방 전체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없지만, 지자체별로는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위기 관리기준으로 설정해 두는 것도 타당함
 - 같은 맥락에서 재정위기 기준인 예산대비채무비율 40%에 해당하는 채무 총량은 113.9조원으로, 이는 2015년 GDP 대비 7.30%로 나타남. 하지만 이러한 채무총량은 지방 전체적으로 재정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실적 으로 발생하기 어려움

<표 4-11> 예산대비채무비율 모니터링 기준으로 지방채무 총량규모 설정

(단위: 조원, %)

구분	예산	모니터링 기준		
TE	2015년 4분기	25%	40%	
계	284.8	71.2	113.9	
(GDP 대비)	(18.22)	(4.56)	(7.30)	

- 지방재정위기 관리기준(재정주의 기준 예산대비채무비율 25%)으로 채무총 량을 설정할 경우 2015년의 채무총량은 71.2조원, GDP 대비 4.56%임
 - 이를 2020년까지 연장하여 추정하면 <표 4-12>와 같으며 2018년에는 채무총량 84조원, GDP 대비 5%에 근접하며, 그 이후부터는 채무총량이 GDP 대비 5%를 초과하고 있음

<표 4-12> 예산대비채무비율 25% 기준 채무총량 추정

(단위: 조원, %)

					1	L 11. — L, 70/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최종예산	284.8	301.9	319.9	339.1	359.4	380.9
채무총량	71.2	75.5	80.0	84.8	89.9	95.2
GDP	1,560.7	1,610.95	1,662.83	1,716.37	1,771.64	1,828.68
GDP 대비 채무비율	4.56	4.68	4.81	4.94	5.07	5.21

- 주: 1. 2015년도 기준으로 추계
 - 2. 2015년도 최종예산은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의 예산대비채무비율 산정에서 사용한 최종예산 (4분기)을 사용
 - 3. 최종예산성장율은 2011-2015의 평균성장율 5.99%(순계 성장률), GDP 성장률은 2011-2015의 평균성장율 3.2%를 사용하여 추계함

5. 지방채무 총량 규모 설정에 대한 평가

- 채무총량 설정의 기준으로 지방순채무, 지방총채무(순계), 관리채무, 지방채발 행한도액, 재정위기관리 기준으로 구분하여 지방채무 총량을 설정할 수 있음
- 지방채무 총량은 2015년 기준으로 설정한 후, 경제 및 지방재정 성장율, 지방분권 및 지방재원 조달 측면에서의 적정한 지방채 활용 등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추정하였음. 따라서 2020년 기준으로 지방채무 총량을 설정한 결과 <표 4-13> 같이 나타남. 각 기준에 대하여 평가하면 다음과 같음
 - 지방순채무 기준은 지방채(차입금, 지방채 증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중앙 정부의 차입금을 제와하는 범위로, 이는 지방채무를 정확히 나타내고 있지 않아, 이를 기준으로 채무총량을 설정하는 것은 범위가 너무 좁음
 - 지방총채무(순계) 기준은 지방재정법, 재정건전화법 등에서 정하는 채무범 위로 지방의 실질적 현금채무를 나타내 주고 있음. 향후 국가채무 산정에 도 지방순채무보다는 지방총채무를 기준으로 해야 함. 이 기준은 국가채무 비율 45% 기준으로 사용하는 최소 지방채무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채무 최소기준으로 활용할수 있음.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채무를 엄격히 관리하는 기준으로 사용함이 바람직함
 - 관리채무 기준은 지방총채무에 BTL 임차료 잔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방
 의 실질적인 채무를 관리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 이는 지방채무 관리의
 각종 지표로 활용하는 채무관리기준으로 사용이 가능함
 - 지방채발행한도액 기준은 관리채무에 향후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우발채무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지방채발행 기준으로는 사용가능하지만 실 질적인 지방채무관리로는 적합하지 않음
 - 재정위기 관리기준인 예산대비채무비율 25%는 재정위기 발생 초기를 진 단하는 기준으로 채무총량을 가장 많게 설정하는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함
- 따라서 지방총채무 기준, 관리채무 기준, 지방재정위기 기준으로 설정한 채

무총량을 지방채무관리의 기준으로 사용 가능함

- 지방총채무 기준은 지방채무를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는 기준으로, 관리채무기준은 지방재정운영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채무를 사용하는 기준, 재정위기 관리 기준은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지방채무 최대 기준으로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20년 기준으로 지방채무총량을 설정하면,
 - 지방채무 최소기준(엄격관리 기준): 지방채무 45.5조원, GDP 대비 2.5%
 - 지방채무 자율기준(자율성 기준): 지방채무 54.3조원, GDP 대비 3.0%
 - 지방채무 최대기준(실질적 한도액): 지방채무 95.2조원, GDP 대비 5.2%
- 따라서 지방채무는 GDP 대비 2.5%에서 5% 사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표 4-13> 지방채무 총량규모 설정 대안의 비교

(단위: 조원, %)

구분	채무범위	2015	2020	비고
지방순채무 기준	지방채(차입금, 지방채증권)-정부차입금	30.5 (1.95)	40.8 (2.23)	- 현재 국가채무 산정시 범위 - 실질적 지방채무 범위로 보기 곤란
지방총채무 기준 (순계)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	34.0 (2.18)	45.5 (2.49)	- 국가채무 산정시 지방순채무보 다는 총채무 사용이 바람직함 - 재정건전화법의 지방채무 범위임
관리채무 기준	지방총채무(순계)+중복 분포함+BTL임차료 잔액	40.5 (2.60)	54.3 (2.97)	- 지방재정채무 관리 범위로 적합
지방채발행한 도액 기준	관리채무+우발채무 50%	57.6 (3.69)	77.1 (4.21)	- 지방채발행한도액 설정에는 필요 - 우발채무는 확정채무가 아니므 로 관리 부적합
재정위기관리 기준	예산대비 25%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	71.2 (4.56)	95.2 (5.21)	- 지자체 채무관리 차원에서 재 정위기 발생의 최저 수준으로 적합

주: 2020년 채무총량 추정은 최종예산(2011-2015)의 평균 증가율을 적용함

제3절 기방자치단체별 안분

1. 안분 기준

- 외국의 지방채무관리 기준을 보면 재산세 과표, 자체세입, 경상세입, 일반재 원세입, 총세입 및 세출, 총예산 대비 비중으로 지방채발행, 지방채상환의 관리기준으로 하고 있음
 - 국가의 경우는 채무관리를 외국이든 우리나라든 GDP 대비로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의 경우 GRDP 사용의 한계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자체별 지방채무 총량 관리도 외국과 유사한 기준인 세입이나 재정규모 등으로 관리함이 바람직함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발행한도액이 매년 설정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수도 있음
- 지방채무 총량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하는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 과 같은 기준을 검토함
 - 지방채발행한도액(기본한도액) 설정 기준
 - 재정규모(통합재정규모) 기준
 - 경상수익(통합회계) 기준
 - 일반재원(일반, 기타회계) 기준

2. 시뮬레이션 결과

○ 지방채무 총량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하는 기준으로 지방채발행한도액 (기본한도액) 설정 기준, 지방채발행한도액(기본한도) 3년 평균 기준, 재정 규모(통합재정규모) 기준, 경상수익(통합회계) 기준, 일반재원(일반, 기타회 계) 기준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시뮬레이션 결과 이들 방법 모두 지방자치단체 간 안분 비중에 큰 차이가 없어, 지방채무와 관련이 있는 지방채발행한도액(3년 평균) 기준으로 안분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표 4-14> 채무 총량의 지자체별 안분 비중

(단위: %)

					(11. 79)
구 분	2015년 발행 한도액기준	2014~2016년 발행 평균한도액 기준	통합재정 규모 기준	일반재원 기준	경상수익 기준
서울 본청	19.832	19.819	9.369	13.608	13.502
서울 종로구	0.091	0.081	0.138	0.165	0.144
서울 중구	0.091	0.083	0.129	0.177	0.151
서울 용산구	0.081	0.075	0.131	0.141	0.140
서울 성동구	0.089	0.082	0.169	0.166	0.150
서울 광진구	0.091	0.087	0.162	0.170	0.157
서울 동대문구	0.091	0.084	0.186	0.170	0.159
서울 중랑구	0.094	0.087	0.202	0.188	0.165
서울 성북구	0.108	0.101	0.226	0.203	0.185
서울 강북구	0.091	0.085	0.194	0.168	0.163
서울 도봉구	0.091	0.084	0.181	0.160	0.156
서울 노원구	0.123	0.116	0.283	0.226	0.217
서울 은평구	0.099	0.091	0.227	0.190	0.172
서울 서대문구	0.086	0.080	0.159	0.162	0.147
서울 마포구	0.096	0.090	0.192	0.204	0.177
서울 양천구	0.106	0.100	0.204	0.189	0.183
서울 강서구	0.111	0.106	0.261	0.211	0.200
서울 구로구	0.099	0.093	0.205	0.183	0.172
서울 금천구	0.074	0.069	0.142	0.134	0.125
서울 영등포구	0.101	0.094	0.197	0.196	0.173
서울 동작구	0.086	0.081	0.170	0.175	0.157
서울 관악구	0.101	0.096	0.218	0.188	0.176

구 분	2015년 발행 한도액기준	2014~2016년 발행 평균한도액 기준	통합재정 규모 기준	일반재원 기준	경상수익 기준
서울 서초구	0.116	0.108	0.184	0.206	0.199
서울 강남구	0.177	0.160	0.266	0.345	0.321
서울 송파구	0.123	0.114	0.241	0.233	0.214
서울 강동구	0.096	0.089	0.196	0.187	0.176
부산 본청	3.079	3.314	3.837	3.977	4.205
부산 기장군	0.241	0.227	0.053	0.058	0.178
부산 중구	0.030	0.028	0.099	0.072	0.056
부산 서구	0.032	0.029	0.088	0.069	0.070
부산 동구	0.030	0.028	0.099	0.069	0.066
부산 영도구	0.032	0.030	0.183	0.116	0.070
부산 진구	0.062	0.058	0.120	0.087	0.109
부산 동래구	0.044	0.041	0.138	0.105	0.080
부산 남구	0.047	0.044	0.157	0.088	0.099
부산 북구	0.044	0.041	0.199	0.133	0.081
부산 해운대구	0.064	0.059	0.174	0.334	0.122
부산 사하구	0.049	0.047	0.136	0.088	0.095
부산 금정구	0.047	0.044	0.104	0.104	0.081
부산 강서구	0.049	0.046	0.110	0.077	0.091
부산 연제구	0.039	0.036	0.097	0.071	0.072
부산 수영구	0.037	0.034	0.132	0.087	0.066
부산 사상구	0.047	0.043	0.224	0.188	0.083
대구 본청	2.067	2.126	2.507	2.442	2.737
대구 달성군	0.325	0.302	0.077	0.074	0.249
대구 중구	0.034	0.032	0.199	0.129	0.069
대구 동구	0.054	0.052	0.118	0.085	0.119
대구 서구	0.042	0.040	0.107	0.078	0.080
대구 남구	0.034	0.034	0.203	0.135	0.074
대구 북구	0.064	0.059	0.194	0.138	0.123
대구 수성구	0.067	0.064	0.246	0.158	0.129

구 분	2015년 발행 한도액기준	2014~2016년 발행 평균한도액 기준	통합재정 규모 기준	일반재원 기준	경상수익 기준
대구 달서구	0.076	0.073	0.194	0.259	0.150
인천 본청	0.000	0.114	3.373	3.231	3.418
인천 강화군	0.241	0.226	0.115	0.130	0.165
인천 옹진군	0.155	0.144	0.068	0.067	0.127
인천 중구	0.064	0.059	0.203	0.157	0.121
인천 동구	0.037	0.036	0.137	0.133	0.066
인천 남구	0.062	0.058	0.227	0.176	0.152
인천 연수구	0.067	0.064	0.250	0.172	0.124
인천 남동구	0.089	0.086	0.150	0.119	0.162
인천 부평구	0.054	0.053	0.225	0.190	0.158
인천 계양구	0.057	0.053	0.161	0.171	0.110
인천 서구	0.084	0.079	0.109	0.128	0.178
광주 본청	1.370	1.729	1.639	1.454	1.602
광주 동구	0.037	0.034	0.097	0.073	0.065
광주 서구	0.047	0.044	0.154	0.106	0.093
광주 남구	0.044	0.041	0.137	0.081	0.078
광주 북구	0.067	0.063	0.224	0.127	0.118
광주 광산구	0.067	0.062	0.212	0.129	0.118
대전 본청	1.670	1.961	1.464	1.426	1.587
대전 동구	0.037	0.035	0.162	0.103	0.098
대전 중구	0.047	0.044	0.156	0.096	0.091
대전 서구	0.071	0.067	0.212	0.140	0.135
대전 유성구	0.067	0.061	0.171	0.120	0.118
대전 대덕구	0.042	0.039	0.133	0.084	0.078
울산 본청	1.744	1.745	1.100	1.100	1.273
울산 울주군	0.404	0.381	0.120	0.094	0.288
울산 중구	0.057	0.053	0.155	0.148	0.088
울산 남구	0.076	0.071	0.098	0.076	0.131
울산 동구	0.047	0.041	0.103	0.093	0.073

구 분	2015년 발행 한도액기준	2014~2016년 발행 평균한도액 기준	통합재정 규모 기준	일반재원 기준	경상수익 기준
울산 북구	0.054	0.051	0.265	0.348	0.089
세종 본청	0.734	0.831	0.381	0.546	0.577
경기 본청	4.456	4.926	7.560	7.053	7.723
경기 수원시	1.488	1.609	0.855	0.983	1.127
경기 성남시	1.202	1.138	0.776	0.931	0.932
경기 고양시	0.769	0.867	0.693	0.810	0.710
경기 용인시	0.544	0.574	0.817	0.940	0.983
경기 부천시	0.746	0.700	0.552	0.653	0.564
경기 안산시	1.108	0.892	0.537	0.555	0.641
경기 안양시	0.530	0.507	0.450	0.451	0.483
경기 남양주시	0.520	0.491	0.471	0.446	0.460
경기 화성시	0.776	0.779	0.655	0.995	0.959
경기 평택시	0.544	0.495	0.554	0.312	0.528
경기 의정부시	0.392	0.366	0.348	0.482	0.504
경기 시흥시	0.281	0.286	0.460	0.409	0.398
경기 파주시	0.404	0.374	0.381	0.388	0.388
경기 광명시	0.365	0.336	0.253	0.270	0.277
경기 김포시	0.000	0.077	0.417	0.513	0.312
경기 군포시	0.303	0.298	0.254	0.321	0.248
경기 광주시	0.254	0.263	0.272	0.297	0.312
경기 이천시	0.288	0.280	0.273	0.344	0.340
경기 양주시	0.192	0.207	0.241	0.264	0.253
경기 오산시	0.227	0.213	0.173	0.190	0.199
경기 구리시	0.214	0.206	0.169	0.370	0.173
경기 안성시	0.360	0.337	0.260	0.249	0.258
경기 포천시	0.074	0.198	0.270	0.261	0.278
경기 의왕시	0.200	0.188	0.138	0.160	0.163
경기 하남시	0.224	0.240	0.181	0.220	0.194
경기 여주시	0.337	0.315	0.208	0.231	0.237

구 분	2015년 발행 한도액기준	2014~2016년 발행 평균한도액 기준	통합재정 규모 기준	일반재원 기준	경상수익 기준
경기 동두천시	0.168	0.159	0.139	0.135	0.145
경기 과천시	0.209	0.198	0.122	0.152	0.143
경기 양평군	0.281	0.259	0.209	0.227	0.234
경기 가평군	0.232	0.222	0.171	0.175	0.173
경기 연천군	0.259	0.240	0.165	0.192	0.194
강원 본청	1.027	1.001	2.013	1.372	1.319
강원 춘천시	0.468	0.439	0.377	0.351	0.352
강원 원주시	0.372	0.344	0.380	0.393	0.402
강원 강릉시	0.426	0.380	0.317	0.312	0.324
강원 동해시	0.155	0.141	0.129	0.137	0.137
강원 태백시	0.071	0.077	0.115	0.132	0.113
강원 속초시	0.113	0.112	0.113	0.121	0.116
강원 삼척시	0.286	0.278	0.198	0.225	0.268
강원 홍천군	0.345	0.316	0.199	0.222	0.217
강원 횡성군	0.192	0.191	0.148	0.161	0.151
강원 영월군	0.222	0.202	0.144	0.155	0.135
강원 평창군	0.246	0.220	0.156	0.164	0.161
강원 정선군	0.239	0.215	0.143	0.169	0.149
강원 철원군	0.209	0.188	0.134	0.154	0.155
강원 화천군	0.168	0.157	0.099	0.116	0.113
강원 양구군	0.172	0.156	0.093	0.108	0.103
강원 인제군	0.234	0.211	0.133	0.147	0.143
강원 고성군	0.155	0.144	0.114	0.114	0.113
강원 양양군	0.126	0.120	0.101	0.106	0.102
충북 본청	1.099	1.125	1.610	1.212	1.162
충북 (신)청주시	0.939	0.811	0.878	0.826	0.888
충북 충주시	0.333	0.359	0.321	0.641	0.334
충북 제천시	0.318	0.305	0.246	0.265	0.267
충북 보은군	0.190	0.169	0.122	0.132	0.128

구 분	2015년 발행 한도액기준	2014~2016년 발행 평균한도액 기준	통합재정 규모 기준	일반재원 기준	경상수익 기준
충북 옥천군	0.219	0.195	0.147	0.145	0.148
충북 영동군	0.244	0.228	0.151	0.163	0.158
충북 증평군	0.079	0.083	0.078	0.077	0.076
충북 진천군	0.131	0.152	0.150	0.157	0.146
충북 괴산군	0.163	0.168	0.158	0.153	0.144
충북 음성군	0.232	0.224	0.195	0.194	0.199
충북 단양군	0.214	0.199	0.115	0.129	0.129
충남 본청	1.303	1.418	2.102	1.492	1.615
충남 천안시	0.419	0.434	0.566	0.597	0.680
충남 공주시	0.369	0.341	0.238	0.248	0.248
충남 보령시	0.227	0.209	0.230	0.248	0.234
충남 아산시	0.377	0.380	0.379	0.404	0.398
충남 서산시	0.360	0.353	0.287	0.284	0.290
충남 논산시	0.286	0.262	0.253	0.230	0.226
충남 계룡시	0.042	0.042	0.063	0.071	0.079
충남 당진시	0.355	0.334	0.269	0.292	0.298
충남 금산군	0.207	0.190	0.153	0.153	0.146
충남 부여군	0.251	0.227	0.206	0.192	0.182
충남 서천군	0.204	0.183	0.164	0.151	0.146
충남 청양군	0.209	0.194	0.127	0.138	0.135
충남 홍성군	0.266	0.233	0.207	0.193	0.191
충남 예산군	0.273	0.250	0.191	0.200	0.198
충남 태안군	0.261	0.250	0.180	0.199	0.172
전북 본청	1.219	1.242	2.175	1.319	1.276
전북 전주시	0.552	0.533	0.588	0.511	0.573
전북 군산시	0.512	0.464	0.388	0.374	0.344
전북 익산시	0.308	0.279	0.408	0.337	0.354
전북 정읍시	0.296	0.283	0.273	0.252	0.250
전북 남원시	0.318	0.302	0.236	0.224	0.223

구 분	2015년 발행 한도액기준	2014~2016년 발행 평균한도액 기준	통합재정 규모 기준	일반재원 기준	경상수익 기준
전북 김제시	0.207	0.214	0.251	0.231	0.227
전북 완주군	0.214	0.213	0.233	0.231	0.217
전북 진안군	0.195	0.179	0.129	0.129	0.125
전북 무주군	0.192	0.179	0.115	0.119	0.114
전북 장수군	0.187	0.170	0.115	0.114	0.107
전북 임실군	0.200	0.188	0.140	0.138	0.129
전북 순창군	0.200	0.185	0.126	0.126	0.118
전북 고창군	0.244	0.231	0.182	0.177	0.174
전북 부안군	0.227	0.213	0.164	0.156	0.156
전남 본청	1.111	1.099	2.563	1.540	1.455
전남 목포시	0.022	0.082	0.257	0.460	0.234
전남 여수시	0.374	0.435	0.405	0.435	0.391
전남 순천시	0.512	0.521	0.368	0.379	0.530
전남 나주시	0.177	0.211	0.236	0.246	0.243
전남 광양시	0.325	0.317	0.237	0.256	0.284
전남 담양군	0.190	0.168	0.140	0.140	0.127
전남 곡성군	0.187	0.177	0.121	0.127	0.124
전남 구례군	0.170	0.160	0.104	0.108	0.103
전남 고흥군	0.345	0.319	0.216	0.220	0.398
전남 보성군	0.249	0.229	0.153	0.168	0.160
전남 화순군	0.249	0.242	0.179	0.208	0.193
전남 장흥군	0.227	0.195	0.151	0.145	0.139
전남 강진군	0.123	0.128	0.136	0.138	0.130
전남 해남군	0.347	0.309	0.209	0.000	0.218
전남 영암군	0.259	0.237	0.169	0.315	0.164
전남 무안군	0.249	0.230	0.162	0.178	0.170
전남 함평군	0.150	0.155	0.154	0.136	0.130
전남 영광군	0.202	0.209	0.172	0.182	0.180
전남 장성군	0.158	0.168	0.144	0.146	0.140

구 분	2015년 발행 한도액기준	2014~2016년 발행 평균한도액 기준	통합재정 규모 기준	일반재원 기준	경상수익 기준
전남 완도군	0.229	0.216	0.171	0.160	0.154
전남 진도군	0.172	0.160	0.135	0.132	0.124
전남 신안군	0.224	0.207	0.185	0.189	0.178
경북 본청	2.362	2.336	3.218	2.025	2.123
경북 포항시	0.697	0.603	0.553	0.573	0.600
경북 경주시	0.394	0.377	0.435	0.456	0.453
경북 김천시	0.409	0.378	0.276	0.320	0.306
경북 안동시	0.525	0.469	0.384	0.369	0.366
경북 구미시	0.591	0.554	0.534	0.632	0.569
경북 영주시	0.296	0.259	0.232	0.222	0.218
경북 영천시	0.301	0.276	0.254	0.260	0.260
경북 상주시	0.308	0.291	0.261	0.300	0.295
경북 문경시	0.197	0.190	0.221	0.231	0.209
경북 경산시	0.180	0.226	0.310	0.332	0.338
경북 군위군	0.158	0.144	0.111	0.121	0.115
경북 의성군	0.335	0.316	0.196	0.220	0.212
경북 청송군	0.192	0.175	0.124	0.130	0.122
경북 영양군	0.158	0.152	0.097	0.111	0.104
경북 영덕군	0.175	0.162	0.139	0.143	0.136
경북 청도군	0.236	0.218	0.145	0.145	0.147
경북 고령군	0.180	0.157	0.118	0.121	0.116
경북 성주군	0.153	0.147	0.176	0.200	0.146
경북 칠곡군	0.145	0.179	0.197	0.186	0.195
경북 예천군	0.227	0.210	0.157	0.172	0.168
경북 봉화군	0.241	0.226	0.133	0.157	0.153
경북 울진군	0.236	0.206	0.190	0.339	0.194
경북 울릉군	0.091	0.080	0.065	0.064	0.059
경남 본청	1.882	2.073	2.958	2.572	2.448
경남 (신)창원시	1.377	1.667	1.019	1.141	1.180

구 분	2015년 발행 한도액기준	2014~2016년 발행 평균한도액 기준	통합재정 규모 기준	일반재원 기준	경상수익 기준
경남 진주시	0.434	0.421	0.378	0.414	0.428
경남 통영시	0.207	0.218	0.194	0.208	0.203
경남 사천시	0.283	0.266	0.207	0.218	0.212
경남 김해시	0.409	0.397	0.515	0.480	0.494
경남 밀양시	0.379	0.353	0.242	0.245	0.244
경남 거제시	0.288	0.296	0.289	0.283	0.285
경남 양산시	0.301	0.286	0.310	0.348	0.358
경남 의령군	0.192	0.175	0.130	0.134	0.130
경남 함안군	0.214	0.198	0.149	0.145	0.144
경남 창녕군	0.212	0.227	0.162	0.162	0.160
경남 고성군	0.227	0.211	0.152	0.162	0.156
경남 남해군	0.204	0.188	0.128	0.138	0.134
경남 하동군	0.222	0.211	0.150	0.169	0.164
경남 산청군	0.224	0.211	0.141	0.158	0.149
경남 함양군	0.227	0.211	0.151	0.146	0.141
경남 거창군	0.286	0.257	0.179	0.195	0.191
경남 합천군	0.313	0.286	0.197	0.211	0.198
제주 본청	2.601	2.498	1.582	1.778	1.784

주) 일반재원은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이며, 나머지는 통합회계 기준임

<표 4-15> 2014~2016년 평균 발행한도액 기준 지자체별 채무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데그미ス	24701 713 (201513)	(ピカ・/0, ゴビ/
	평균비중	34조원 기준 (2015년)	45조원 기준(2020년)
서울 본청	19.819	67,386	90,178
서울 종로구	0.081	276	369
서울 중구	0.083	281	376
서울 용산구	0.075	255	341
서울 성동구	0.082	279	373
서울 광진구	0.087	297	397
서울 동대문구	0.084	286	383
서울 중랑구	0.087	297	397
서울 성북구	0.101	344	460
서울 강북구	0.085	289	387
서울 도봉구	0.084	286	383
서울 노원구	0.116	393	526
서울 은평구	0.091	310	415
서울 서대문구	0.080	271	362
서울 마포구	0.090	305	408
서울 양천구	0.100	338	453
서울 강서구	0.106	359	481
서울 구로구	0.093	315	421
서울 금천구	0.069	234	313
서울 영등포구	0.094	320	428
서울 동작구	0.081	276	369
서울 관악구	0.096	328	439
서울 서초구	0.108	367	491
서울 강남구	0.160	544	728
서울 송파구	0.114	388	519
서울 강동구	0.089	302	404
부산 본청	3.314	11,268	15,079
부산 기장군	0.227	770	1,031
부산 중구	0.028	96	129

구 분	평균비중	34조원 기준 (2015년)	45조원 기준(2020년)
부산 서구	0.029	99	132
부산 동구	0.028	94	125
부산 영도구	0.030	102	136
부산 진구	0.058	198	265
부산 동래구	0.041	141	188
부산 남구	0.044	148	199
부산 북구	0.041	138	185
부산 해운대구	0.059	200	268
부산 사하구	0.047	159	212
부산 금정구	0.044	148	199
부산 강서구	0.046	156	209
부산 연제구	0.036	122	164
부산 수영구	0.034	115	153
부산 사상구	0.043	146	195
대구 본청	2.126	7,228	9,673
대구 달성군	0.302	1,026	1,372
대구 중구	0.032	109	146
대구 동구	0.052	177	237
대구 서구	0.040	135	181
대구 남구	0.034	115	153
대구 북구	0.059	200	268
대구 수성구	0.064	216	289
대구 달서구	0.073	247	331
인천 본청	0.114	388	519
인천 강화군	0.226	768	1,028
인천 옹진군	0.144	489	655
인천 중구	0.059	200	268
인천 동구	0.036	122	164
인천 남구	0.058	198	265
인천 연수구	0.064	216	289
인천 남동구	0.086	292	390

구 분	평균비중	34조원 기준 (2015년)	45조원 기준(2020년)
인천 부평구	0.053	180	240
인천 계양구	0.053	180	240
인천 서구	0.079	268	359
광주 본청	1.729	5,880	7,869
광주 동구	0.034	115	153
광주 서구	0.044	148	199
광주 남구	0.041	138	185
광주 북구	0.063	213	286
광주 광산구	0.062	211	282
대전 본청	1.961	6,666	8,921
대전 동구	0.035	120	160
대전 중구	0.044	151	202
대전 서구	0.067	229	307
대전 유성구	0.061	208	279
대전 대덕구	0.039	133	178
울산 본청	1.745	5,932	7,938
울산 울주군	0.381	1,296	1,735
울산 중구	0.053	180	240
울산 남구	0.071	242	324
울산 동구	0.041	141	188
울산 북구	0.051	172	230
세종 본청	0.831	2,827	3,783
경기 본청	4.926	16,749	22,415
경기 수원시	1.609	5,471	7,322
경기 성남시	1.138	3,868	5,176
경기 고양시	0.867	2,949	3,947
경기 용인시	0.574	1,952	2,612
경기 부천시	0.700	2,382	3,187
경기 안산시	0.892	3,032	4,058
경기 안양시	0.507	1,723	2,306
경기 남양주시	0.491	1,671	2,236

구 분	평균비중	34조원 기준 (2015년)	45조원 기준(2020년)
경기 화성시	0.779	2,647	3,542
경기 평택시	0.495	1,681	2,250
경기 의정부시	0.366	1,244	1,665
경기 시흥시	0.286	973	1,303
경기 파주시	0.374	1,270	1,700
경기 광명시	0.336	1,143	1,529
경기 김포시	0.077	260	348
경기 군포시	0.298	1,013	1,355
경기 광주시	0.263	895	1,198
경기 이천시	0.280	953	1,275
경기 양주시	0.207	703	940
경기 오산시	0.213	724	968
경기 구리시	0.206	700	937
경기 안성시	0.337	1,145	1,533
경기 포천시	0.198	672	899
경기 의왕시	0.188	640	857
경기 하남시	0.240	815	1,090
경기 여주시	0.315	1,070	1,432
경기 동두천시	0.159	541	725
경기 과천시	0.198	674	902
경기 양평군	0.259	880	1,177
경기 가평군	0.222	755	1,010
경기 연천군	0.240	815	1,090
강원 본청	1.001	3,405	4,556
강원 춘천시	0.439	1,491	1,996
강원 원주시	0.344	1,169	1,564
강원 강릉시	0.380	1,294	1,731
강원 동해시	0.141	479	641
강원 태백시	0.077	260	348
강원 속초시	0.112	380	509
강원 삼척시	0.278	945	1,264

구 분	평균비중	34조원 기준 (2015년)	45조원 기준(2020년)
강원 홍천군	0.316	1,075	1,439
강원 횡성군	0.191	648	867
강원 영월군	0.202	687	920
강원 평창군	0.220	750	1,003
강원 정선군	0.215	731	979
강원 철원군	0.188	638	853
강원 화천군	0.157	534	714
강원 양구군	0.156	531	711
강원 인제군	0.211	716	958
강원 고성군	0.144	489	655
강원 양양군	0.120	409	547
충북 본청	1.125	3,824	5,117
충북 (신)청주시	0.811	2,756	3,689
충북 충주시	0.359	1,221	1,634
충북 제천시	0.305	1,036	1,386
충북 보은군	0.169	575	770
충북 옥천군	0.195	664	888
충북 영동군	0.228	776	1,038
충북 증평군	0.083	281	376
충북 진천군	0.152	518	693
충북 괴산군	0.168	573	766
충북 음성군	0.224	760	1,017
충북 단양군	0.199	677	906
충남 본청	1.418	4,821	6,451
충남 천안시	0.434	1,476	1,975
충남 공주시	0.341	1,161	1,554
충남 보령시	0.209	711	951
충남 아산시	0.380	1,291	1,728
충남 서산시	0.353	1,200	1,606
충남 논산시	0.262	890	1,191
충남 계룡시	0.042	143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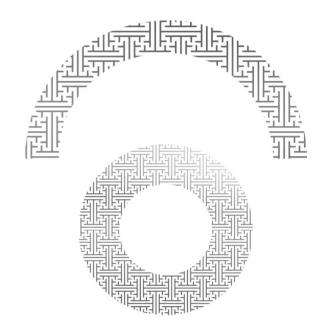
구 분	평균비중	34조원 기준 (2015년)	45조원 기준(2020년)
충남 당진시	0.334	1,135	1,519
충남 금산군	0.190	646	864
충남 부여군	0.227	770	1,031
충남 서천군	0.183	622	832
충남 청양군	0.194	659	881
충남 홍성군	0.233	791	1,059
충남 예산군	0.250	851	1,139
충남 태안군	0.250	851	1,139
전북 본청	1.242	4,222	5,650
전북 전주시	0.533	1,812	2,424
전북 군산시	0.464	1,577	2,111
전북 익산시	0.279	950	1,271
전북 정읍시	0.283	963	1,289
전북 남원시	0.302	1,026	1,372
전북 김제시	0.214	726	972
전북 완주군	0.213	724	968
전북 진안군	0.179	609	815
전북 무주군	0.179	609	815
전북 장수군	0.170	578	773
전북 임실군	0.188	638	853
전북 순창군	0.185	630	843
전북 고창군	0.231	786	1,052
전북 부안군	0.213	724	968
전남 본청	1.099	3,738	5,002
전남 목포시	0.082	279	373
전남 여수시	0.435	1,478	1,978
전남 순천시	0.521	1,773	2,372
전남 나주시	0.211	716	958
전남 광양시	0.317	1,078	1,442
전남 담양군	0.168	570	763
전남 곡성군	0.177	601	805

구 분	평균비중	34조원 기준 (2015년)	45조원 기준(2020년)
전남 구례군	0.160	544	728
전남 고흥군	0.319	1,085	1,453
전남 보성군	0.229	778	1,041
전남 화순군	0.242	823	1,101
전남 장흥군	0.195	664	888
전남 강진군	0.128	435	582
전남 해남군	0.309	1,052	1,407
전남 영암군	0.237	807	1,080
전남 무안군	0.230	783	1,048
전남 함평군	0.155	528	707
전남 영광군	0.209	711	951
전남 장성군	0.168	570	763
전남 완도군	0.216	734	982
전남 진도군	0.160	544	728
전남 신안군	0.207	705	944
경북 본청	2.336	7,944	10,631
경북 포항시	0.603	2,051	2,745
경북 경주시	0.377	1,283	1,717
경북 김천시	0.378	1,286	1,721
경북 안동시	0.469	1,596	2,135
경북 구미시	0.554	1,884	2,522
경북 영주시	0.259	880	1,177
경북 영천시	0.276	937	1,254
경북 상주시	0.291	989	1,324
경북 문경시	0.190	646	864
경북 경산시	0.226	768	1,028
경북 군위군	0.144	489	655
경북 의성군	0.316	1,075	1,439
경북 청송군	0.175	593	794
경북 영양군	0.152	518	693
경북 영덕군	0.162	549	735

구 분	평균비중	34조원 기준 (2015년)	45조원 기준(2020년)
경북 청도군	0.218	742	993
경북 고령군	0.157	534	714
경북 성주군	0.147	500	669
경북 칠곡군	0.179	609	815
경북 예천군	0.210	713	954
경북 봉화군	0.226	768	1,028
경북 울진군	0.206	700	937
경북 울릉군	0.080	271	362
경남 본청	2.073	7,049	9,433
경남 (신)창원시	1.667	5,669	7,587
경남 진주시	0.421	1,432	1,916
경남 통영시	0.218	742	993
경남 사천시	0.266	906	1,212
경남 김해시	0.397	1,348	1,804
경남 밀양시	0.353	1,200	1,606
경남 거제시	0.296	1,005	1,345
경남 양산시	0.286	971	1,299
경남 의령군	0.175	593	794
경남 함안군	0.198	674	902
경남 창녕군	0.227	770	1,031
경남 고성군	0.211	718	961
경남 남해군	0.188	640	857
경남 하동군	0.211	716	958
경남 산청군	0.211	716	958
경남 함양군	0.211	718	961
경남 거창군	0.257	875	1,170
경남 합천군	0.286	971	1,299
제주 본청	2.498	8,493	11,366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건의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약

- □ 지방채무 총량관리 필요
 - 정부에서는 국가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건전화법(안)을 제정하여 현재 국회에 제출한 상태임. 이 재정건전화법(안)에서는 재정준칙으로 국가 채무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국가채무 총량을 GDP대비 45%이하로 유지하게 다는 것임. 그리고 45%를 초과할 경우 국가채무 감축 을 계획하고 있음
 - 참고로 국가중기재정계획(2016-2020)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으로 유지를 계획하고 있음
 - 2015년 국가채무비율이 37.9%로 40%대에 근접하고 있으며, 경제성장 및 재정규모가 팽창함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45%를 초과할 수도 있어, 정부는 5년마다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교육부장관과 협의 하여 45% 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재정건전화법의 국가채무비율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에서도 국가채무관리계 획에 따른 지방채무 총량기준을 지방재정법에 규정해야 할 상황임
 - 이 경우 지방채무 총량관리 기준을 재정건전화법의 규정과 연동하여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와는 별도로 지방채무 자체의 총량관리 기준으로 규정할 것인가는 지방재정 현실 및 지방채무 활용 등을 고려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 지방채무 총량 관리 목표 설정 및 지자체별 한도액 산정 방법 모색
 - 지방채무 관리 기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무 총량규모 설정이 중요 함. 지방채무 총량을 재정건전화법의 국가채무 범위 내에서 정할 것인지, 지방채무 자체적인 총량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중요함
 - 지방채무 총량 설정은 국가채무비율 45% 범위 내에서 설정하는 방안과 이와는 별도로 지방채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총량기준을 검토할 필 요가 있음
 - 지방재정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국가예산 중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사용하는 비중도 2016년 기준 44%(지방교육재정 14% 미포함)로, 국가채무비율 45% 내에서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채무('15년 기준 28조원)를 GDP 대비 2%('15년 순채무 기준 1.66%, 총채무 기준 1.79%) 미만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엄격하여 현실성이 없음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준으로 지방채무 총량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 지방 전체적으로의 지방채무 총량도 중요하지만 지방차치단체별 총량을 설 정하는 것도 중요함
 - 본 연구는 지방채무 총량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안분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총량을 설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별 총량은 다양한 기준을 검토하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적절한 안분기준으로 제시하였음

제2절 정책건의

- □ 채무총량 규모 설정(안)
 - 지방총채무 기준, 관리채무 기준, 지방재정위기 기준으로 설정한 채무총량 을 지방채무관리의 기준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지방총채무 기준은 지방채무를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는 기준으로, 관리채무기준은 지방재정운영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채무를 사용하는 기준, 재정위기 관리 기준은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지방채무 최대 기준으로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20년 기준으로 지방채무 총량을 설정하면,
 - 지방채무 최소기준(엄격관리 기준): 지방채무 45.5조원, GDP 대비 2.5%
 - 지방채무 자율기준(자율성 기준): 지방채무 54.3조원, GDP 대비 3.0%
 - 지방채무 최대기준(실질적 한도액): 지방채무 95.2조원, GDP 대비 5.2%
 - 지방채무는 GDP 대비 2.5%~5% 사이에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지방채무 총량규모 설정 대안>

(단위: 조원. %)

구분	채무범위	2015	2020	비고
지방순채무 기준	지방채(차입금, 지방채증권) -정부차입금	30.5 (1.95)	40.8 (2.23)	- 현재 국가채무 산정시 범위 - 실질적 지방채무 범위로 보 기 곤란
지방총채무 기준 (순계)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	34.0 (2.18)	45.5 (2.49)	- 국가채무 산정시 지방순채무 보다는 총채무 사용이 바람 직함 - 재정건전화법의 지방채무 범 위임
관리채무 기준	지방총채무(순계) +중복분포함 +BTL임차료 잔액	40.5 (2.60)	54.3 (2.97)	- 지방자치단체 채무관리 범위 로 적합
지방채발행한 도액 기준	관리채무+우발채무 50%	57.6 (3.69)	77.1 (4.21)	- 지방채발행한도액 설정에는 필요 - 우발채무는 확정채무가 아니 므로 관리 부적합
재정위기관리 기준	예산대비 25%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	71.2 (4.56)	95.2 (5.21)	- 지자체 채무관리 차원에서 재정위기 발생의 최저 수준 으로 적합

□ 지방자치단체별 채무총량 안분(안)

- 지방채무 총량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하는 기준으로 지방채발행한도액 (기본한도액) 설정 기준, 지방채발행한도액(기본한도) 3년 평균 기준, 재정 규모(통합재정규모) 기준, 경상수익(통합회계) 기준, 일반재원(일반, 기타회 계) 기준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시뮬레이션 결과 이들 방법 보두 지방자치단체간 안분 비중에 큰 차이가 없어, 지방채무와 관련이 있는 지방채발행한도액(3년 평균) 기준으로 안분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참고> 재정건전화법의 국가채무의 관리 규정

제3장 재정준칙

- 제6조(국가채무의 관리) ①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국가 채무를 국내총생산의 100분의 45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채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채무 중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무는 제외한다.
 - 1. 「국가재정법」제91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
 - 2.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채,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 위 중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책임이 확정된 금전채무,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채무부담 행위
 - ③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의 100분의 45를 초과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당해 회계연도 부터 5회계연도 이내에 국내총생산의 100분의 45를 초과한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국가재정법」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재정법」에 따른 결산상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의 100분의 45를 초과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동법 제9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부 국가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5년마다 재정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국가채무의 관리 목표를 재검토할 수 있다.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2017~2020년 국가채무관리계획」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남황우, 일본의 지방채 발행제도(미발표 자료), 2016

대한민국정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영계획」

배정아서정섭, 「지방자치단체 우발부채 관리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조기현하능식,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한국조세연구원, 「국가채무 관리방안」, 2008

한국지방재정학회, 지방채무 규모 및 지방채 제도 개선방안, 2012

행정자치부, 「2015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행정자치부,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도입 해외연수 연찬자료집, 2004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2013

OECD, Economic Outlook 97 database('15년 6월)

World Bank(http://data.worldbank.org/indicator)(GDP)

http://www.ukforex.co.uk/forex-tools/historical-rate-tools/yearly-average-rates(환율정보)